

박사학위논문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조세 회피에 관한 연구
- 세무조사 기업을 중심으로 -

2019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경 영 학 과

회 계 학 전 공

박 애 자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홍 용 식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조세 회피에 관한 연구

- 세무조사 기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ax Avoidance

- Focused on the corporations investigated by tax
authorities -

2018년 12 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경 영 학 과

회 계 학 전 공

박 애 자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홍 용 식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조세 회피에 관한 연구

- 세무조사 기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ax Avoidance

- Focused on the corporations investigated by tax
authorities -

위 논문을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2 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경 영 학 과

회 계 학 전 공

박 애 자

국 문 초 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조세 회피에 관한 연구

- 세무조사 기업을 중심으로 -

한성대학교 대학원

경 영 학 과

회 계 학 전 공

박 애 자

국가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어 감에 따라 재정의 기능도 더욱더 확대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조세는 수천만 사람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의 성실한 납세는 법적 의무 이전에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이다. 최근 국내·외에서 기업의 납세 행태를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과 결부시켜 연구한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그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본 연구는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세 회피의 관계를 분석하고, 세무조사를 받은 해당연도의 조세 회피 수준이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과 그리하지 아니한 기업 간 차이가 있는지, 세무조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세 회피의 관계에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전과 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세 회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첫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측정치인 CSR

은 조세 회피측정치인 TS에 대해 유의한 양(+)의 값이 나타났다. 둘째, 세무조사 더미변수는 조세 회피측정치인 TS와 BTD에서 모두 유의한 음(-)의 값이 나타났다. 셋째, 세무조사가 CSR 활동수준과 조세 회피의 관계에서 조절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과 그렇지 아니한 기업의 CSR이 조세 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세무조사 직전 연도 더미변수는 CSR과 조세 회피측정치인 TS의 관계에서 양(+)의 방향으로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무조사 직후 연도 더미변수는 CSR과 조세 회피측정치인 TS 및 BTD의 관계에서 모두 양(+)의 방향으로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거나 기업이 사회적 책임 활동을 조세 납부에 대한 대체재로 인식하고 있다면 사회적 책임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기업이 조세 회피 수준도 높다는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조세 회피에 대한 과세당국의 강력한 행정행위인 세무조사가 기업의 CSR 활동과 조세 회피의 관계에 어떠한 작용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관련 연구를 다각화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의사결정권자, 기업에 투자하는 주주 또는 채권자, 사회적 책임 활동을 평가하는 평가기관, 그리고 조세법을 집행하는 과세당국 및 조세법을 입안하는 관련 기관, 재정을 집행하는 관련 기관 등에 게 시의성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주요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조세 회피, 세무조사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1.2 연구내용 및 방법	2
1.3 논문의 구성	3
II. 이론적 배경	4
2.1 기업의 사회적 책임	4
2.1.1 개념	4
2.1.2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지표	10
2.2 조세 회피	18
2.2.1 조세 회피의 개념	18
2.2.2 조세 회피의 측정치	21
2.2.3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24
2.3 세무조사	30
III. 선행연구의 고찰	32
3.1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세 회피에 관한 연구	32
3.1.1 국외 연구	32
3.1.2 국내 연구	36
3.2 세무조사와 조세 회피에 관한 연구	42

3.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5
IV. 연구 설계	47
4.1 가설 도출	47
4.2 변수 측정	53
4.2.1 종속 변수	53
4.2.2 독립 변수	56
4.3 연구 모형	59
4.3.1 <가설 1>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59
4.3.2 <가설 2>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60
4.3.3 <가설 3>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60
4.3.4 <가설 4>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61
4.4 표본의 선정	63
4.4.1 <가설 1>, <가설 2>, <가설 3>의 검증을 위한 표본의 선정	63
4.4.2 <가설 4>의 검증을 위한 표본의 선정	65
V. 실증분석	68
5.1 변수의 기술통계	68
5.2 상관 분석	70
5.3 회귀 분석	72
5.3.1 <가설 1>의 검증(CSR과 조세 회피의 관련성)	72
5.3.2 <가설 2>의 검증(세무조사와 조세 회피의 관련성)	75
5.3.3 <가설 3>의 검증(CSR과 조세 회피 간 세무조사의 조절효과) ...	78
5.3.4 <가설 4>의 검증(CSR과 조세 회피 간 세무조사 전과 후의 조절효과)	
.....	83
5.4 추가 분석	86

5.4.1 기업집단의 CSR과 조세 회피 간 조절효과	87
5.4.2 기업성장성(Δ SALES)의 CSR과 조세 회피 간 조절효과	90
5.4.3 연구대상을 다변화하여 실증 분석	93
 VI. 결 론	 99
6.1 연구결과의 요약	99
6.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101
 참 고 문 헌	 103
 ABSTRACT	 108

표 목 차

[표 2-1] 국제기구들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의	5
[표 2-2] CSR 유사용어	7
[표 2-3]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모형의 주요 평가항목	12
[표 2-4] 상장기업에 대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평가결과	14
[표 2-5] 경제정의지수 평가항목	16
[표 2-6] 절세, 조세 회피, 탈세의 개념	20
[표 2-7] 조세 회피 측정방법 비교	23
[표 2-8]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및 법인세 계산 구조	26
[표 2-9] 결산조정 항목	28
[표 2-10] 법인세회계 용어의 정의	29
[표 2-11] 연도별 세무조사 대상 선정 현황	31
[표 3-1]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조세 회피 관련 선행연구 요약 ...	40
[표 3-2] 세무조사와 조세 회피에 관한 선행연구 요약	44
[표 4-1] 연도별 법인세율(지방소득세 포함) 현황	55
[표 4-2] 추정과세소득의 계산식	55
[표 4-3] <가설 1>, <가설 2>, <가설 3>의 검증을 위한 표본의 선정	64
[표 4-4] 표본기업의 산업별 분포	65
[표 4-5] <가설 4>의 검증을 위한 표본의 선정	66
[표 5-1] 주요변수의 기술 통계	68
[표 5-2] 주요 변수 간 피어슨 상관계수	71
[표 5-3] <가설 1>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74
[표 5-4] <가설 2>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77
[표 5-5] <가설 3>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80
[표 5-6] 비조사기업과 세무조사기업의 회귀분석 결과(1)	81
[표 5-7] 비조사기업과 세무조사기업의 회귀분석 결과(2)	82
[표 5-8] <가설 4>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85

[표 5-9] CSR과 조세 회피 간 기업집단의 조절효과 분석	89
[표 5-10] CSR과 조세 회피 간 Δ SALES의 조절효과 분석	92
[표 5-11] 표본의 재선정	93
[표 5-12] 표본을 재선정(1)하여 가설 3을 재검증	95
[표 5-13] 표본을 재선정(2)하여 가설 3을 재검증	98

그림 목 차

[그림 2-1] 기업과 직접적, 간접적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9
[그림 4-1] 연구 모형	62
[그림 4-2] 실증분석의 체계도	67

I. 서 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조세는 정치적 권력 단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사업의 재원 조달을 위하여 민간경제로부터 법률에 따라서 반대급부가 없이 강제적으로 화폐를 징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주노종, 2007). 조세는 재정수입의 확보에 국한되지 않고 부를 재분배한다든지 사회 또는 경제 정책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된다(이준규와 김갑순, 2012). 조세가 중요한 이유는 국가의 존재 기반이기 때문이다. 재정 국가에서의 조세의 기능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의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다. 국가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어 감에 따라 재정의 기능도 더욱더 확대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조세는 수천만 사람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의 성실한 납세는 법적의무 이전에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사회적 책임¹⁾(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기도 하다. 최근 국내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납세 행태와 연관 지어 연구한 보고서가 계속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그 연구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기은선(2012)은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 활동에 임하여 대중에게 좋은 이미지를 다져놓은 기업일수록 탈세 사실이 드러났을 때 감당해야 할 비조세비용이 크기 때문에 조세 회피에 더 소극적일 것이라고 보고하였고(Hasseldine and Morris, 2013 : 김경화와 권순창, 2014 : 박준령과 김요환, 2014 : 최미화, 2015 : 김규철과 최수비, 2016), 김요환(2015)은 코스닥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기업이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할수록 더욱 더 적극적인 조세 회피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면서 기업의 CSR 활동 비용에 대한 부담이 기업의 공격적인 조세 회피를 일으킨다고 해석하였다. Watson(2015)은 기업의 소득수준이 낮거나 낮을 것으로 예측될 경우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1)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문맥에 따라 'CSR' 과 혼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활동과 조세 회피는 양(+)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Davis et al.(2016)은 사회적 책임 수준이 높은 기업들이 조세 관련 로비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높은 CSR 기업이 더 많은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세 회피에 관하여 일관적이지 않은 연구를 좀 더 체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조세 순응(tax compliance)을 높이기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단은 세무조사이다. 세무조사는 적정한 과세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부가적으로는 성실신고를 유도한다. 과세당국의 강력한 행정조치인 세무조사는 기업의 조세 회피수준에 긍정적인든 부정적인든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세무조사는 기업의 CSR 활동 수준에도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기업의 CSR 활동과 조세 회피의 관계에 세무조사를 개입시켜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세무조사를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조세 회피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한 선행연구는 있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세 회피의 관계에 세무조사 전과 후를 각각 개입시켜 연구한 논문은 찾기 어렵다. 처음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세 회피의 관계에 세무조사 전 및 후가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기업의 기업집단 여부 및 기업의 성장성이 CSR과 조세 회피 간 조절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업의 의사결정권자, 기업에 투자하는 주주 또는 채권자, 사회적 책임 활동을 평가하는 평가기관, 그리고 조세법을 집행하는 과세당국 및 조세법을 입안하는 관련 기관에게 시의성 있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1.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조세 회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의 가장 주된 목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조세 회피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한계점을 고려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측정치를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해 온 KEJI 지수 대신 ESG 모형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나아가 기업의 CSR 활동과 조세 회피의 관계에 세무조사를 접목하고자 세무조사 받은 기업을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건건이 수작업으로 수집하였다. 기업의 세무 관련 정보가 과세당국의 비밀유지의무에 의해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유가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조세 회피와의 관계를, 둘째, 세무조사 받은 기업과 그렇지 아니한 기업 간 세무조사 받은 그해에 조세 회피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셋째, 세무조사가 CSR과 조세 회피의 관계에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 동안 세무조사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직전 2개년도, 당해 조사연도, 세무조사 직후 2개 연도 총 5개 연도를 연속한 재무자료 및 CSR 평가 자료를 입수하여 세무조사 전과 후가 각기 CSR과 조세 회피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1.3 논문의 구성

이하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Ⅰ장 서론에 이어, 제Ⅱ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세회피 및 세무조사에 대해 언급한다. 제Ⅲ장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세 회피에 관한 선행 연구, 세무조사와 조세 회피에 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하고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을 기술한다. 제Ⅳ장에서는 가설을 도출하고 변수 측정 및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표본을 선정을 기술하며, 제Ⅴ장에서는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 및 추가 분석 내용을 정리하고, 제Ⅵ장에서는 연구 결과 요약,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을 기술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기업의 사회적 책임

2.1.1 개념

기업은 ‘지속 가능 경영’을 목표로 한다.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본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상인계급이 출현한 이래로 그들이 상행위를 함에 있어 지켜오던 윤리 혹은 정신 등과 같은 암묵적 규범이었다(이상민, 2016). 하지만 이 개념은 현대에 들어와 보다 더 복잡적이고 다의적으로 새롭게 재탄생하여 최근에는 국제적 표준으로 까지 수렴되고 있다(이상민, 2016). 우리 사회는 역사적인 배경과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사회에서 기대하는 기업의 책임도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기 마련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며, 따라서 구체적이고 단정적으로 개념을 정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화 추세로 국제기구들은 당시 기업들에 공통된 국제규범으로서 사회적 책임 수행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국제기구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정의한 내용은 [표 2-1]과 같다.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는 “기업이 사회의 요구사항과 목표에 어떻게 대응하고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이라고 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기업과 사회와의 공생관계를 성숙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기업이 취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WBCSD(지속가능발전세계기업협의회)는 “직원, 가족, 지역사회 및 사회 전체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라고 정의하고, ISO(국제표준화기구)는 “조직의 경제, 사회, 환경문제를 사람, 지역공동체 및 사회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목적으로 다루기 위한 균형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한다.

[표 2-1] 국제기구들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의

국제기구	정의	용어
UNCTAD (국제연합무역개발 협의회)	기업이 사회의 요구사항과 목표에 어떻게 대응하고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	CSR
EU 집행위원회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 경제적 문제를 기업 활동 및 이해관계자와 상호작용에 통합하는 개념	CSR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업과 사회와의 공생관계를 성숙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기업이 취하는 행동	CR
ILO (국제노동기구)	기업이 법적의무를 넘어 자발적으로 전개하는 이니셔티브이며, 기업활동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방식	CSR
IOE (국제사용자기구)	법 준수를 뛰어넘는 다양한 사회 경제, 환경 분야에서 기업의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활동	CSR
WBCSD (지속가능발전 세계기업협의회)	직원, 가족, 지역사회 및 사회전체와 협력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	CSR
ICC (국제상공회의소)	기업이 책임 있는 방식으로 기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	CR
ISO (국제표준화기구)	조직의 경제, 사회, 환경문제를 사람, 지역공동체 및 사회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있는 목적으로 다루기 위한 균형적인 접근방법	CR

출처 : 정재훈(2016), CSR과 윤리경영, p.70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은 사용자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정의되어 왔으며 나아가 다양한 유사용어를 파생시켜왔다. CSR에 대한 유사용어는 [표 2-2]와 같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유사용어로는 기업을 하나의 개인 시민으로 본 개념으로서 ‘기업시민의식(corporate citizenship)’이 있으며 ‘사회적(social)’이란 단어를 사용할 경우 기업의 책임을 사회문제로만 한정하기 때문에 사회와 환경 문제를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기업의 책임’이 있고, 기업만을 따로 떼어내 다른 조직들이나 정부들과 다르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고하여 ‘조직의 사회적 책임’ 등이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하여 많은 견해가 있지만 널리 알려진 견해로서 ‘Carroll’의 정의를 들 수 있다. Carroll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1단계로 경제적 책임, 2단계로 법률적 책임, 3단계로 윤리적 책임, 4단계로 자선적 책임을 들고 있다. 1단계의 경제적 책임은 경제적인 부를 유지하며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업의 기본적인 책임을 말하며, 2단계의 법적 책임은 법적 규제의 범위 내에서 경제적 사명을 다하는 책임을 의미하며 3단계의 윤리적 책임은 사회가 약속한 행동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며, 마지막 4단계의 자선적 책임은 사회 개선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책임 있는 행동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정의한 네 가지 중 1단계의 경제적 책임은 기업 본연의 책임과 관련된 이익 추구라는 부분이고 나머지 책임들은 기업이 속한 사회와 관련한 부분이다. 경제개발 초창기에는 기본적 책임인 이윤 창출 및 고용 증대, 즉 경제적 책임을 성취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완수된 것으로 여겼으나 사회가 발전하고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게 됨에 따라 사회는 기업들에 윤리적 책임 및 자선적 책임을 기대하게 되었고 이러한 자선적 책임은 점차로 기업의 사회공헌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본질적인 경제적 활동에서 더 나아가 보다 더 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일련의 공헌적인 활동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는 재정적인 지원과 비 재정적인 지원 등 기업의 다양한 자산과 핵심적인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여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사회 역량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 참여 및 투자 활동이다.

[표 2-2] CSR의 유사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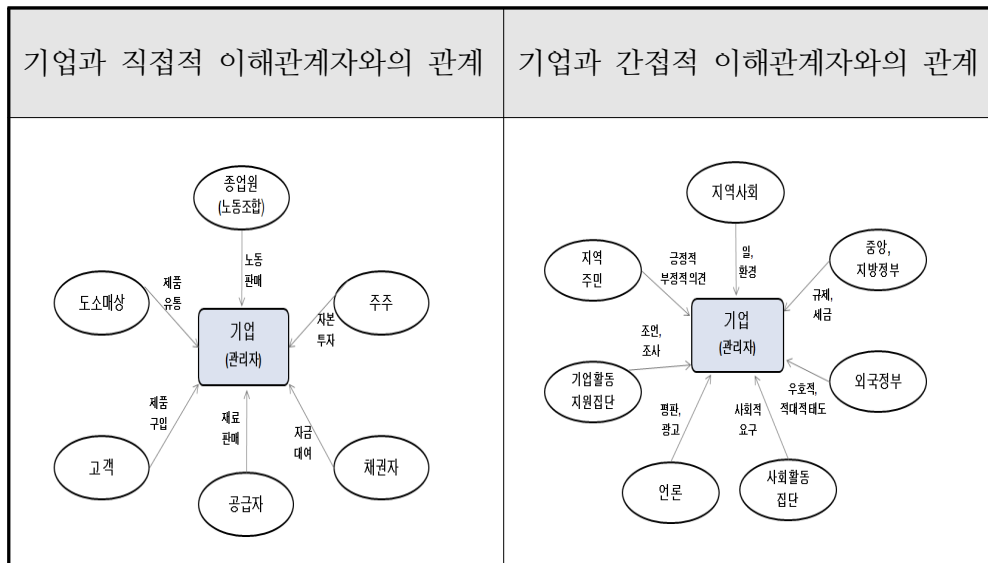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기업시민의식 corporate citizenship	기업을 하나의 개인시민으로 본 개념으로서 기업은 권리와 의무(책임)를 동시에 가지며 그 의무(책임)은 사회와 경제 분야를 뛰어 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반론도 있음
기업의 책임 corporate responsibility(CR)	‘사회(social)’란 단어로 한정할 경우 기업의 책임을 사회문제들에만 한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환경 문제 등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뜻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가 기업에 부과하는 의무이며 경영층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기본 틀을 의미함. 이 용어를 사용하는 이들은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는 자발적 성격을, corporate accountability는 규제 또는 구속적 성격을 가진다고 봄
조직의 사회적 책임 organizational social responsibility(OSR) · 조직의 책임 organizational responsibility(OR) · 사회적 책임 social responsibility(SR)	기업만을 따로 떼어내서 다른 조직들이나 정부기관들과 다르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함 국제표준화기구(ISO) SR 자문그룹: OSR 이란 조직들이 경제, 사회, 환경문제에 대처함에 있어 사람, 지역공동체 및 사회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방법(2004.4.보고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social responsibilities of business	일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사용하며, 그 구속성 여부에 관계없이 기업행동에 대한 사회의 정당한 기대감을 의미한다고 함

출처 : 이형준과 서영진(2004),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무엇인가, 노동경제 연구원, pp.21-22. 정재훈 재인용, CSR과 윤리경영, p.174.

CSR이란 기업이 투자자, 주주 및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일으키는 환경문제, 인권문제 등 예기치 못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 받으면서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은 경제적 이익만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닌 사회적 책임도 함께 감당하는 기업을 원하게 되었으며,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은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외면 시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경영기법의 하나로 생각되었던 CSR이 점차 규범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제는 법적의무가 되고 있다. 기업이 지속가능보고서²⁾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공시하였던 비재무적 정보가 강제공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환경 파괴적 행위를 제한하고 노예노동을 제한하는 법률들도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따라서 재무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 환경적 측면, 인권적 측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CSR의 본질이다. 즉, CSR은 결코 영리성의 포기가 아니며, 더욱 많은 영리를 얻기 위해 공익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다.

기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기업과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도 상대에 따라 달라진다. Post 등(2002)은 기업의 이해관계자를 직접적 이해관계자와 간접적 이해관계자로 구분한다(정재훈, 2016, 재인용). [그림 2-1]과 같이 기업의 직접적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존속과 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서 고객, 공급업자, 종업원, 그리고 투자자를 지칭하고, 직접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사회의 다른 이해관계자 즉 일반시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활동 그룹, 언론, 기타 등을 간접적 이해관계자라고 한다. Post 등은 간접적 이해관계자라고 해서 이들이 직접적 이해관계자 것보다 덜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2)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환경, 사회 활동 그 성과에 대한 보고서로서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는 가이드라인(ISO 26000)을 통해 기업조직의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생태계, 공정거래 관행, 소비자이슈, 지역사회 참여 등에 관련된 내용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담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림 2-1]기업과 직접적, 간접적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출처 : Post, J. E., Lawrence, A. T. and Weber, J. (2002), Business and Society: Corporate Strategy, Public Policy, Ethics. 10th ed, The McGraw-Hill Companies, Inc. p.11, 정재훈(2016) 재인용, CSR과 윤리경영, 도서출판북넷, pp.231-232.

최근 국내 기업들이 CSR 활동에 지출한 연 총액이 매년 3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2013년 세전 이익 대비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은 3.76%³⁾로 이는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 기업들을 능가하는 수준이다(이상민, 2016).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호황이나 불황 같은 경기와 상관없이 한국 기업들의 CSR 관련 예산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이상민, 2016). 기업은 사회로부터 법에 따라 인격을 부여받은 법적 인격체이다. 기업도 다른 사회의 구성원과 동일한 의무와 규범을 따를 책임이 있다. 그래서 CSR과 유사한 용어로 ‘기업 시민의식’이 있다. 한국 대기업 중에는 많은 수의 기업이 CSR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CSR 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목표로 기업평판 제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남영숙, 2013)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외부시민단체와 언론의 엄격한 감시활동이 활성화될 때만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지속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가도록 동기 부여할

3) 2014년 주요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참조

4) 정재훈(2016) 재인용, CSR과 윤리경영, 도서출판북넷, p.82

책임이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2.1.2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 지표

기업의 동반성장, 사회적 책임, 공유가치 창출 등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기관에서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비재무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유엔 산하단체인 UNEPFI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Finance Initiative)는 기업에 대한 투자 결정 시 이해관계자들이 고려해야 할 성과로 재무성과 이외에 친환경(Environmental), 사회 기여(Social), 그리고 투명한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성과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비재무성과 항목은 이후 유엔의 사회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으로 개발하여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주요 동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⁵⁾에서 이러한 세 가지 핵심요소를 기반으로 한 ESG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기업을 평가하고 있다. 민간기업인 서스틴베스트(Sustinvest)는 투자전략상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기업의 ESG 분석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자주 사용되는 지표 중 하나로 경제실천연합 산하 경제정의연구소(KEJI: Korean Economic Justice Institute)에서 매년 공개하는 경제정의지수가 있다. 다음은 ESG 평가 모형과 경제정의지수(KEJI Index)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5)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가 사원기관이다.

2.1.2.1 ESG 평가모형

점점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비재무성과의 측정에 관한 필요성을 인식한 지 오래다. 국내 다수의 기관에서 비재무적 성과측정 모형을 개발하여 더욱 더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비재무적 성과의 핵심항목인 환경경영(Environmental), 사회책임(Social), 기업지배구조(Governance)의 성과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내 기관으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을 들 수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02년에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2003년부터 국내기업의 기업지배구조(Governance)를 평가해오다 2011년에 환경경영(Environmental)과 사회책임(Social) 항목을 추가한 ESG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평가해오고 있다.

이모형은 ISO26000⁶⁾,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⁷⁾의 지속가능성 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 등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의 실정을 고려하여 개발한 한국형 지속가능성 평가모형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 S, G의 평가 결과는 7개의 등급 (S, A+, A, B+, B, C, D)으로 구분되는데, ESG 통합평가는 부문별 평가 결과가 B+ 등급 이상인 기업을 공개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매년 각 기업에 대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분야에 대하여 분야별 300점 만점의 평가점수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지배구조 부문은 모든 등급을 발표하지만, 사회 부문과 환경 부문은 B, C, D 등급을 'B 이하'로 통합하여 발표하고 있다. ESG 등급은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투자 의사 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2018년 기준 평가대상기업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전체,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일부(대형주, 금융회사,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그리고 평가를 요청한 기업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개발한 ESG 평가모형의 환경경영, 사회책임,

6) ISO 26000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개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세계적인 표준이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표준화기구 (ISO) 는 사회적 책임 경영의 국제표준으로 ISO 26000을 2010년 11월에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7) GRI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협력하여 1997년에 설립하였으며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는 국제 다중 이해관계자와 독립적인 비영리단체이다.

기업지배구조 부문의 주요 평가사항은 [표 2-3]과 같다.

[표 2-3]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모형의 주요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환경책임	환경전략	최고경영자의 환경경영 실천의지 표명, 환경성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환경경영 계획수립, 환경경영 투자이행비율
	환경조직	환경교육실시 여부, 환경경영 실무추진 조직, 환경경영 의사결정 조직, 이사회 내 환경경영활동 검토
	환경경영	녹색구매방침 및 시스템 보유, 공급업체의 친환경 경영활동 검토, 환경회계정보 관리, 환경성과평가체계 구축
	환경성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저감실적, 에너지 사용량 및 절감실적, 용수 사용량, 절감실적 및 재사용, 폐기물 배출량, 저감실적 및 재활용
	이해관계자 대응	사업보고서상 환경정보 공개, 사업보고서의 환경정보 공개, 환경이슈에 대한 의사소통 채널, 지역사회 환경보전활동, 환경관련 국제 이니셔티브 참여
사회책임	근로자	고용안정정책, 노동조합, 노조가입비율, 산재예방정책수립, 안전교육실시, 교육훈련방침 수립, 성과평가 피드백 실시, 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
	협력사 및 경쟁사	공정거래원칙 수립, 공정거래실천 프로그램, 부패방지원칙 수립, 내부고발제도, 협력사 선정 시 윤리경영 고려, 협력사 윤리경영 정기적 관리, 정기적 관리 결과 재입찰 심사반영, 협력사 부패방지정책
	소비자	소비자에 대한 공정거래, 소비자 안전 및 보건,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와의 소통(만족도 제고 정책, 피해보상 절차 및 기구)
	지역사회	사회공헌활동, 사회공헌기금, 지역공급업체 우선배려, 지역인재 채용 또는 개발, NGO 및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십,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통합보고서 등의 발간
지배구조	주주권리 보호	의결권행사 활성화 제도(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집중투표제,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 배당적정성, 기업지배구조 헌장
	이사회	사외이사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이사회 개최 횟수, 출석률이 저조한 사외이사, 사외이사 평가, 정기이사회규정, 임원배상책임보험, 이사보수한도 실시급을
	감사기구	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자, 외부감사인(감사용역비, 비감사용역비, 주요 비감사용역), 외부감사인 감사의견
	공시	기업설명회 횟수, 자율공시, 조회공시 및 정정공시, 장마감 이후 공시, 지배구조평가등급 홈페이지 공시, 지배구조 관련 정보 공시

출처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홈페이지(www.cgs.or.kr), 2017 ESG 평가 기본보고서 참조

E, S, G의 각 항목의 대분류를 살펴보면 환경부문은 환경전략 및 조직, 환경경영관리, 환경경영활동, 환경성과, 이해관계자 대응, 지역사회로 분류하여 평가하고, 사회부문은 근로자, 협력사 및 경쟁사, 소비자로 분류하여 평가하며, 지배구조부문은 주주권리보호, 이사회, 공시, 감사기구, 경영과실배분으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ESG 평가 모형은 기업의 세금 납부는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공개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 동안 유가증권 시장 상장기업에 대한 ESG 평가등급 결과는 [표 2-4]와 같다. ESG 통합등급 B이하인 기업은 전체 유가증권 상장기업 수 대비 2015년 84.77%, 2016년 79.10%, 2017년 77.90%로 점차 줄어들고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가늠할 수 있다. 아직까지 B⁺이상 등급이 20% 안팎인 사실을 비춰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인다.

[표 2-4] 유가증권 상장기업에 대한 한국기업지배연구원의 ESG평가결과

평가 년도	평가 등급	ESG통합등급		ESG 부문별 등급 기업수(개, %)					
				지배구조		사회		환경	
		개	%	개	%	개	%	개	%
2017년 (733개)	S			1	0.14				
	A ⁺	5	0.68	3	0.41	28	3.82	4	0.55
	A	39	5.32	53	7.23	48	6.55	58	7.91
	B ⁺	118	16.10	155	21.15	108	14.73	147	20.05
	B이하	571	77.90	521	71.08	549	74.90	524	71.49
2016년 (713개)	A ⁺	8	1.12	32	4.49	33	4.63	3	0.42
	A	33	4.63	31	4.35	28	3.93	62	8.70
	B ⁺	108	15.15	99	13.88	126	17.67	132	18.51
	B이하	564	79.10	551	77.28	526	73.77	516	72.37
2015년 (696개)	A ⁺	1	0.14	12	1.72	4	0.57	5	0.72
	A	27	3.88	37	5.32	35	5.03	40	5.75
	B ⁺	78	11.21	90	12.93	96	13.79	141	20.26
	B이하	590	84.77	557	80.03	561	80.60	510	73.28
2014년 (694개)	A ⁺	2	0.29	13	1.87	4	0.58	6	0.86
	A	44	6.34	30	4.32	59	8.50	40	5.76
	B ⁺	88	12.68	111	15.99	81	11.67	135	19.45
	B이하	560	80.69	540	77.81	550	79.25	513	73.92
2013년 (693개)	A ⁺	6	0.87	7	1.01	10	1.44	6	0.87
	A	34	4.91	31	4.47	46	6.64	36	5.19
	B ⁺	91	13.13	113	16.31	90	12.99	122	17.60
	B이하	562	81.10	542	78.21	547	78.93	529	76.33
2012년 (710개)	A ⁺	6	0.85	11	1.55	15	2.11	10	1.41
	A	38	5.35	29	4.08	47	6.62	29	4.08
	B ⁺	81	11.41	111	15.63	80	11.27	134	18.87
	B이하	585	82.39	559	78.73	568	80.00	537	75.63
2011년 (668개)	A ⁺	4	0.60	14	2.10	11	1.65	9	1.35
	A	40	5.99	34	5.09	40	5.99	39	5.84
	B ⁺	48	7.19	105	15.72	59	8.83	36	5.39
	B이하	576	86.23	515	77.10	558	83.53	584	87.43

출처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홈페이지(www.cgs.or.kr)의 자료를 집계

2.1.2.2 경제정의지수(KEJI Index)

국내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많이 사용되는 지표 중 하나로 경제실천연합 산하의 경제정의연구소(KEJI: Korean Economic Justice Institute)에서 매년 공개하는 경제정의지수를 들 수 있다. 경제정의지수는 매년 경제실천연합이 수여하는 경제정의기업상을 수상할 기업의 선정에 사용하는 지표이며 1991년 경제정의연구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존경받을 수 있는 기업평가 모형”을 개발하였는데 편의상 경제정의연구소의 이름을 따라 ‘경제정의지수(KEJI Index)로 명명하였다.

KEJI Index는 2011년까지 건전성, 공정성, 사회공헌도, 소비자 보호 만족도, 환경보호만족도, 직원 만족도, 경제발전 기여도의 총 7개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여 이들 7개 평가 항목에 대하여 건전성 25점, 공정성 15점, 사회봉사 기여도 10점, 소비자 보호 만족도 10점, 환경보호 만족도 15점, 종업원 만족도 15점, 경제발전기여도 10점으로 각 배점하였다. 이 중 경제발전기여도의 세부평가지표는 연구개발 노력정도, 수익성, 성장성, 설비투자, 고용인력 증가율, 조세납부의 수준, 노동 생산성의 증가율, 수출비중 정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이후 KEJI Index는 경제발전기여도를 폐지하여 건전성, 공정성, 사회공헌도, 소비자 보호 만족도, 환경경영, 직원 만족도의 총 6개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들 6개 평가 항목에 대하여 건전성 25점, 공정성 20점, 사회공헌도 15점, 소비자 보호 만족도 15점, 환경경영 10점, 직원만족도 15점으로 각 배점하였다. 이전 경제발전 기여도의 평가지표인 조세납부의 수준은 사회공헌도의 평가지표에 포함되었다.

KEJI Index는 1991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배점이나 평가항목들이 매년 조정되지만 사회적 성과 측정치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수이다. KEJI Index에 의한 기업의 사회적 성과 평가 모형⁸⁾은 [표 2-5]와 같다. 경제정의 지수는 비재무적 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수로 선행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어왔다.

8) 제26회 좋은 기업상 시상식 자료집(2017)

[표 2-5] 경제정의지수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건전성 (25점)	- 지배구조의 건전성: 내부지분율, 전문경영인 정도, 사외이사활동, 소유지배과리도 - 투자지출의 건전성수준: 소비성 지출, 연구개발 지출, 설비투자 - 자본조달의 건전성정도: 부채비율, 고정이하여신/자산 비율, 위험가중 자산비율, 회사채신용등급, 관계사출자, 관계사채무보증
공정성 (20점)	- 공정성: 대규모기업집단지정,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기업결합, 경제력 집중억제, 부당한 공동행위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부당한 지원 행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재판매가적유지행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준수, 은행법준수, 보험업법 준수, 전자금융거래법 준수, 비금융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금융회사의 비금융자회사 보유 - 투명성: 불성실공시, 사업보고서 적정성, 감사위원회 운영, 투표제 실시(집중투표, 서면투표, 전자투표)
사회공헌도 (15점)	- 고용평등 및 확대: 장애인 고용비율, 여성 채용비율, 고용인력증가율, 고용관련 정부포상 - 사회공헌활동: 기부금, 사회복지지원 전담조직 및 추진조직, 사회봉사 프로그램 - 국가재정기여: 조세납부
소비자보호 (15점)	- 소비자 권리보호: 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 소비자중심 경영제도 인증, 고객만족 관련수상, 소비자불만 상담건수, 금융분쟁조정신청, 금융회사별 민원발생평가 - 소비자관련법 준수: 불공정 약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령 위반, 청약확인 등 통지의무 위반, 구매등 거부 의사표시에 대한 구매등 강요 행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령 위반관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위반관련,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 소비자 안전: 품질 및 소비자안전 인증
환경경영 (10점)	- 환경개선노력: 환경경영보고, 에너지효율, 환경투자실적, 환경투자경영방침, 환경보호프로그램 - 환경친화성: 환경관련 인증 및 수상 - 위반 및 오염실적: 수질, 대기분진, 특정유해물질 오염실태
직원만족 (15점)	- 작업장 보건 및 안전: 산재다발 및 중대사고발생, 작업장 보건 및 안전관련 인증 및 수상 - 인적자원개발: 1인당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증가율 - 임금 및 복리후생: 임금보상수준, 복리후생, 근속연수, 사내근로복지기금 - 노사관계: 노사분규 발생여부, 비정규직 비율, 노사관계 개선 프로그램

출처 : 경제실천연합 홈페이지(<http://ccej.or.kr>), 제3회 경실련 좋은 사회적기업상·제26회 경실련 좋은 기업상 시상식자료집(2017년) 참조

2.1.2.3 사회책임투자지수

사회책임투자지수(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 Index)란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 예를 들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들로 구성된 지수이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이 지수를 벤치마크로 활용해 투자 전략에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수로는 미국의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와 영국의 FTSE4GOOD Index⁹⁾가 있다. 또한 2004년에 구성된 JSE SRI Index(Johannesburg Securities Exchange SRI Index) 등이 있다. 한편, 세계 최초의 지수는 1990년에 출시된 Domini 400 Social Index(DS400)이다. 한국의 경우, 2009년 9월에 한국거래소가 기업의 ESG평가점수를 활용하여 출시한 KRX의 SRI와 같은 해 10월에 Dow Jones와 생산성본부(KPC)가 내놓은 다우존스 한국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Korea)가 사회책임투자지수로 활용되고 있다.

9) 유럽의 FTSE4GOOD Index는 CSR을 하는 기업의 목록과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며, 지표는 환경요구사항, 사회 및 주주 요구사항, 인권 요구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2 조세 회피

2.2.1 조세 회피(tax avoidance)¹⁰⁾의 개념

헌법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국민개세주의를 천명하며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조세는 정치적 권력단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민간경제로부터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금전을 징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주노종, 2007). 조세는 재정수입의 확보에 국한되지 않고 부를 재분배한다든지 사회 또는 경제정책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된다(이준규, 2012). 기업은 법적 인격체인 법인으로서 법인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국세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6년 국세청의 연간 세수는 233조원, 그 중 연간 법인세 세수는 52조원으로 국세청 전체 세수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조세 회피에 대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는 없다. 본 연구에서의 조세 회피(tax avoidance)의 개념은 광의의 조세 회피 개념으로 접근하여 탈세(tax evasion), 협의의 조세 회피(tax avoidance)¹¹⁾, 절세(tax saving)행위 모두를 지칭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절세를 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법 해석의 차이 또는 조세 혜택에 관한 요건이 미흡한 경우에 조세 회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절세 또는 조세절약(tax saving)이라 함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조세부담을 낮추는 행위를 말한다. 절세행위는 조세 회피행위와 실무상 구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협의의 조세 회피(tax avoidance)라 함은 사법상 허용되는 법형식을 준수하며 입법취지와 달리 비정상적인 법형식을 사용하여 조세를 경감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¹²⁾과

10) 본 논문에서의 조세 회피는 절세, 협의의 조세 회피, 탈세 개념을 포함한 ‘광의의 조세 회피’를 의미한다.

11) 본 논문에서 협의의 조세 회피는 탈세, 절세와 구별된 개념으로 본다.

12) 형식과 실질이 다를 때, 조세평등주의를 구현하고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실질로 과세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¹³⁾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소득을 낮춰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키므로 그 행위를 부인하고 매매가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조세 회피행위에 판정되면 그 회피한 세액을 추가 징수함은 물론 신고와 납부의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까지 부과한다. 다만 형사적 처벌은 가해되지 않는다.

탈세 또는 조세포탈(tax evasion)이라 함은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닉하는 행위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면탈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절세와 협의의 조세 회피, 탈세의 차이를 정리하면 [표 2-6] 과 같다. 조세는 반대급부가 없는 강제적 부담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자신의 재산을 가능한 한 적게 침해당하도록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조세를 절약하기 위해 세무관리(tax planning)하는 것은 비난 또는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이준규, 2012).

개념상으로는 행위의 구분이 명확하지만 실무에 있어서는 절세와 협의의 조세 회피, 탈세의 경계가 모호하다.

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귀속에 관한 실질로서 과세대상인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내용에 관한 실질로서 세법 중 과세표준 계산 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의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실질 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한다. 우회거래에 관한 실질로서 제3자를 통해 간접방법으로 또는 다단계의 거래방법으로 국세기본법이나 세법혜택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경우에 직접방법이나 하나의 거래방법으로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을 적용한다.

- 1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부가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고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선택하였을 기준에 의하여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표 2-6] 절세와 혐의의 조세 회피, 탈세의 차이

절세 (Tax Saving)	혐의의 조세 회피 (Tax Avoidance)	탈세 (Tax Evasion)
세금추징 없음	세금 추징	세금 추징
가산세 없음	가산세	가산세
형사처벌 없음	형사처벌 없음	형사 처벌
합 법		위 법

2.2.2 조세 회피의 측정치

조세 회피에 대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는 아직 없으며 조세 회피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세 회피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측정치는 없으며 측정치마다 상대적인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연구주제에 맞게 서로 다른 측정치들이 사용되고 있다. 조세 회피를 연구함에 있어 조세 회피측정치가 조세 회피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부 연구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세 회피를 위한 복잡한 세무계획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선행연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Desai & Dharmapala(2006)의 재량적 BTD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신영효 등, 2017). 이에 신영효 등(2017)은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조세 회피측정치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어떠한 측정치가 조세 회피를 잘 측정할 수 있는지 비교 실증하였다. 선행연구 164편으로 조세 회피를 어떻게 측정했으며, 가장 많이 활용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측정방법별로 구하는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기도 했으나, 대개 유효세율(ETR: Effective Tax Rate)과 BTD(Book income Tax income Difference)를 주로 조세 회피측정치로 사용하였는데 ETR은 127회, BTD는 154회 활용한 것으로 보고하였다¹⁴⁾.

유효법인세율은 법인세비용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유효법인세율은 세전이익 단위당 평균세금부담을 의미하므로 유효법인세율이 낮을수록 조세 회피수준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유효법인세율은 분자의 차이에 따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 유효법인세율은 분모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사용하므로 재무이익과 세무이익이 불일치하는 조세 회피(nonconforming tax avoidance)만 포착할 수 있고, 재무이익과 세무이익이 일치하는 조세 회피(conforming tax avoidance)는 포착할 수 없다(최현섭, 2012). 그러므로 재무이익과 세무이익이 같이 낮아지는 거래가 발생할

14) 구체적으로 측정방법의 사용빈도를 보면 Desai & Dharmapala(2006)가 고안한 잔차를 이용하는 방식이 전체 313편 중 113편(36.1%)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장기Cash ETR이 31편(9.9%), Cash ETR과 BTD가 각각 29편(9.3%), GAAP ETR 26편(8.3%), 장기 GAAP ETR 24편(7.7%) 순이었다.

때 유효법인세율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재무보고비용이 낮은 비상장 기업이 재무이익을 낮게 보고하여 법인세를 회피하려 한다면 이런 유형의 조세 회피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분모로 사용하는 유효법인세율에는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

BTD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재무보고이익이 산출되는 반면 법인세법에 의해 세무보고이익이 산출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타나지만 이러한 인식기준으로 생기는 차이 이외에 경영자의 계획에 의해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경영자는 재무보고이익은 높게 측정하여 공시하고, 과세당국에는 세무보고이익을 낮게 보고하여 시장에서는 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효과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법인세 등은 회피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경영자가 인위적으로 재무보고이익을 높이거나 세무보고이익을 낮춤으로써 이익조정 또는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취하면 보고이익 간의 차이가 커지게 된다. Desai and Dhamapala(2006)는 종속변수 BTD에 대하여 총발생액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 즉 잔차를 조세 회피 측정치로 이용하였다.

신영효 등(2017)은 실증분석결과 선행연구에서 많이 활용하는 ETR과 BTD를 이용한 조세 회피측정치가 실제 조세 회피를 비교적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모든 측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귀계수에 대한 유의수준과 설명력은 BTD와 재량적 BTD가 다른 측정치보다 일관되게 높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조세 회피 측정치의 한계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주제에 맞는 측정치를 선택하여 이용하고, 다양한 측정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주의깊게 분석 결과의 차이와 원인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노현섭, 2015).

[표 2-7] 조세 회피 측정방법

구 분		측정방법	계정 (재무제표)	
ETR	GAAP	법인세비용/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	손익계산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재무상태표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손익계산서
	Cash	법인세납부액/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법인세납부액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주식
	장기 GAAP	Σ 법인세비용/ Σ 법인세차감전순이익	GAAP ETR과 같음	
	장기 Cash	Σ 법인세납부액/ Σ 법인세차감전순이익	Cash ETR과 같음	
BTD	산업·조정	개별기업ETR - 산업·규모별 ETR 평균	ETR과 같음	
	BTD	회계이익 - 세무이익 (회계이익: 법인세차감전순 이익 세무이익: 각사업연도소득금 액, 과세표준, 추정과세소득 등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손익계산서
			법인세비용	손익계산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재무상태표
			세율	법정세율
	재량적 BTD	$BTD = \beta_1 TA + \epsilon$	당기순이익	손익계산서
			영업활동 현금흐름	현금흐름표

주1) 추정과세소득 = (법인세비용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법정세율

2) 총발생액은 당기순이익에서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차감하여 구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총 발생액 대신 재량적 발생액($BTD = \beta_1 DA$ (재량적 발생액) + ϵ)를 이용하여 조세 회피를 측정하기도 함.

출처 : 신영효·황보영·정규언(2017)

2.2.3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에 차이가 발생 하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 정책 목적에 의한 차이이다.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세법상 특혜나 불이익을 부여하여 발생하게 된다. 둘째, 손익인식시기에 의한 차이이다. 기업회계는 수익은 발생주의에 의하고 비용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의하여 손익을 인식하나 세무회계에서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셋째, 자산과 부채 평가방법의 차이이다. 자산과 부채의 평가방법에 있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달리 규정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넷째,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개념에 의한 차이이다. 기업회계에서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순자산 증가액은 회계이익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세무회계에서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을 포함한 순자산증가액을 과세소득에 포함하고 있어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는 그 소멸여부에 따라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로 구분한다. 일시적 차이는 발생 이후 일정 기간에 소멸하는 것으로서 세무조정에서 유보(Δ 유보)로 처분되며, 영구적 차이는 발생 이후 영구히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서 세무조정에서는 사외유출 등으로 처분된다(류린과 지상, 2017). 일시적 차이(temporary difference)는 주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부가액과 법인세법에 의한 세무가액의 평가차이를 말하며, 당기의 익금불산입항목 또는 손금산입항목은 미래에 익금산입항목 또는 손금불산입항목으로 과세소득에 가산되는 일시적 차이가 있고 그와 반대인 차감되는 일시적 차이로 구성된다. 이는 미래의 법인세부담액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당기에 과세소득에서 차감한 일시적 차이는 미래의 과세소득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되고, 당기에 과세소득에 가산한 일시적 차이는 미래의 과세 소득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해당한다. 반면 영구적 차이(permanent difference)는 영구적으로 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의 차이가 발생한 이후 기간에 상쇄되어 소멸하지 않는 차이를 말하는데, 이는 법인세법에서는 익금 또는 손금항목이지만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수익 또는 비용계정이 아닌 경우이거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수익 또는 비용 계정이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익금 또는 손금항목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특히 영구적 차이는 일시적 차이와 달리 상쇄되어 소멸 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기간배분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2.2.3.1 법인세 산출 구조

각 사업연도 소득이란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각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법인세법 제14조). 이 때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이라 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당기순이익(수익-비용·손실)을 기초로 계산한다. 즉,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무조정금액을 가감하여 차가감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된 차가감 소득금액에 기부금한도초과액을 가산하고,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을 차감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법인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및 법인세 계산 구조는 [표 2-8]과 같다.

[표 2-8]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및 법인세 계산 구조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이 익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
(+)익 금 산 입 · 손 금 불 산 입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의 합계액
(-)손 금 산 입 · 익 금 불 산 입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의 합계액
= 차 가 감 소 득 금 액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	
=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이 월 결 손 금	10년 이내 발생한 세무계산상 결손금 중 미공제액
(-)비 과 세 소 득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
(-)소 득 공 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 과 세 표 준	
× 세 율	
= 산 출 금 액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10%(마등기 40%)
(+)미 환 류 소 득 에 대 한 법 인 세	미환류소득×10%
= 산 출 세 액 합 계	
(-)세 액 감 면	
(-)세 액 공 제	
(+)가 산 세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	조세특례제한법상 사후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미사용준비금 환입시 이자상당가산액 등
= 충 부 담 세 액	
(-)기 납 부 세 액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 차 감 납 부 할 세 액	

2.2.3.2 세무조정

기업회계는 주주와 채권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세무회계는 공평하고 공정한 조세부담을 부과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양자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기업회계의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한다. 이러한 조정과정을 세무조정이라 한다. 세무조정은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구분된다. 결산조정이라 함은 기업이 손금 항목 등을 장부에 계상하여 결산확정시에 반영하는 것을 말하고, 신고조정이라 함은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 시에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결산조정사항은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주로 현금지출과 무관하며 손금 계상 여부가 기업 자신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들이다. 결산조정 항목은 [표 2-9]와 같다.

신고조정사항은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도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한다. 통상 외부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금으로서 법인세법에서 정한 사업연도에 반드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항목들이 이에 해당한다. 기업이 법인세 신고서에 손금계상을 누락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결산조정사항과 같이 외부와의 거래가 없는 항목 중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항목을 결산조정사항으로 규정하면, 기업은 이를 손금으로 공제하기 위하여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므로 회계감사 시 마찰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이러한 항목은 기업의 의사에 따라 세무상 한도액까지 기업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하여 과세표준 신고할 경우 손금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면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이 이에 해당한다.

[표 2-9] 결산조정 항목

구분	결산조정사항		비고(신고조정 가능여부)
감가상각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①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감가상각의제) ②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충당금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충당금(강제신고조정사항)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가능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		신고조정 가능
준비금	법인세법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가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외감대상법인은 신고조정 가능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가능
대손금	임의대손사유 해당 대손금		강제대손사유 해당 대손금
자산의 평가손실 등	①법에 정한 사유로 인한 재고자산, 고정자산 및 유가증권평가손실 ②생산설비 폐기손실		

2.2.3.3 기업회계의 법인세 비용 인식과정

과세소득(과세표준)에 당기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법인세부담액을 당기 법인세부채로 인식하여 법인세 비용에 반영하고, 세무조정항목 중 법인세 기간 간 배분의 대상인 일시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측정하여 이연법인세 항목(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부채)으로 인식하고 그 증감액을 법인세 비용에 반영한다.

법인세부담액인 당기 법인세 부채에 대한 당기법인세와 일시적 차이에 대한 당기법인세 효과 즉 이연법인세 항목의 증감액이 반영된 이연법인세를 합산하여 당기법인세차감전이익에 대응하는 총법인세비용을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된 총법인세비용은 일괄하여 계상되지 않고, 재무제표상의 이익을 항목별(계속사업손익, 중단사업손익등)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대응시켜 보고하는데 이를 법인세 기간내 배분이라 한다.

[표 2-10] 법인세회계 용어의 정의

용 어	정 의
회계이익(손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산출되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말한다.
과세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부담액을 산출하는 대상소득(결손)을 말한다.
법인세부담액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각 회계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추가되는 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법인세비용	법인세부담액에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일시적 차이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 (가) 가산할 일시적 차이: 자산 또는 부채가 회수·상환되는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일시적인 차이 (나) 차감할 일시적 차이: 자산 또는 부채가 회수·상환되는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일시적인 차이
이연법인세 부채	가산할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미래에 부담하게 될 법인세부담액
이연법인세 자산	미래에 경감될 법인세부담액 (가) 차감할 일시적 차이 (나)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무상 결손금 (다)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등

2.3 세무조사

세무조사는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 및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 서류, 물건 등을 검사하고 조사하는 행위로서 조사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한다(국세청훈령 제1877호(2010.12.31.)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일반세무조사는 특정납세자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세목에 대한 과세요건 또는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말한다.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벌을 적용시킬 목적으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근거하여 범칙혐의 사실을 조사하고 범칙자와 범칙사실을 확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의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공무원은 예외적인 대상자를¹⁵⁾ 제외하고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둘째,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및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 교부 및 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 및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자료거래, 위장 및 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15)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서 예외적인 대상자는 다음의 자로서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 신고한 것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 아니할 수 있다.

- ①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
- ②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셋째, 세무공무원은 과세당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을 근거로 국세청에서 2010년 11월 5일 발표한 2010년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수입금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4년 주기의 순환조사를 실시하고 그 외 기업은 신고 성실도 평가에 의하여 선정하되, 수입금액 50억원 미만의 기업은 무작위 추출 방법을 병행한다. 그동안 세무조사 결과 객관적으로 성실신고가 입증된 조사 모범기업은 조사받은 사업연도 이후 5개 사업연도를 정기 선정에서 제외한다. 단 수입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적용 배제한다. 국세청 통계연보(2017)상의 세무조사대상의 선정 현황은 [표2-11]과 같다. 2016년의 경우 전체 영업 중인 기업 673,374개 중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전체 기업수의 0.81%인 5,445개이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가급적 세무조사 대상 기업수를 최소화하려고 할 것이다.

[표 2-11] 연도별 세무조사 대상 선정 현황

(개, 백만원)

연도	가동 기업	조사 기업	비율(%)	부과세액
2012년	499,599	4,549	0.91	4,937,714
2013년	538,134	5,128	0.95	6,612,839
2014년	576,138	5,443	0.94	6,430,795
2015년	623,411	5,577	0.89	5,511,726
2016년	673,374	5,445	0.81	5,383,682

- 주 1) 가동 기업: 전년도 말 현재 가동 기업을 말함
 2) 해당연도 중 조사 완료한 실적을 기준으로 함
 3) 부과세액은 법인세와 기타세를 포함한 것임

Ⅲ. 선행 연구의 고찰

3.1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세 회피의 관계에 관한 연구

3.1.1 국외 연구

CSR과 조세 회피 간의 관계에 대한 국외 선행연구로 Lutz(2010)는 조세 피난처인 버뮤다, 케이만군도에 본사를 둔 26개 기업과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 20개를 대상으로 설문문을 통해 두 집단의 행동 규범을 분석하였다. 설문결과 법의 준수(obey letter and spirit)와 관련하여 조세피난처 기업과 미국기업은 각 38%, 60% 수준으로 법을 준수(obey letter and spirit)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조세의 납부(payment of taxes)와 관련한 응답은 조세피난처 기업과 미국기업 각 4%, 5%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기업이 조세의 납부에 있어서만큼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을 엿 볼 수 있다. 연구결과 버뮤다, 케이만 반도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스스로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에 비해 거의 모든 행동규범에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Preuss는 사회에 대한 경제적 책임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이 사회적으로 책임있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아이디어를 훼손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풀이하면 조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일 것이다.

Sikka(2010)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윤리적 행위와 조세 회피 간 모순을 비판하였다. 주주는 기업에 자본을, 직원은 인적자원을, 사회를 대표하는 국가는 보안, 법률시스템, 보조금형태 등의 사회 자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주들은 배당금 형태로, 직원은 임금과 급여 형태로, 국가는 조세의 형태로 사회 자본에 대한 수익을 회수한다고 하였다. Sikka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재무부는 다양한 조세 회피(US Treasury, 2009)로 인한 금액이 매년 3,450억 달러가 넘고, 1998년에서 2005년 사이에 국내 기업의 66%와 외국 기업의

68%가 연방 법인세를 내지 않았으며(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08), 주요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는 브로셔와 보고서를 내놓지만 대규모 조세 회피를 동반한다고 지적했다. Sikka는 조세 회피는 주주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조세 회피는 사회전체를 희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미국의 에너지 회사 엔론과 통신 회사 월드컴의 붕괴를 사례로 들어 사회적 책임 활동을 강조하는 기업이 탈세하는 위선적 행위를 지적했다.

Watson(2011)은 조세 회피성향을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BTD)로 설명하고 총발생액으로 설명되지 않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와 장기 현금유효세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CSR 점수에 의한 3그룹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 CSR이 우수기업은 다른 기업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CSR이 낮은 비우수기업은 유의하게 높은 조세 회피성향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Lanis and Richardson(2012)은 호주 기업 중 조세관련 기소기업 20개와 비기소기업 20개를 대상으로 기업이 지역사회에서 페널티를 피하고 인정받기 위해 사회적, 환경적 공시를 늘린다는 정당성 이론(legitimacy theory)을 테스트하였다. 종속변수는 CSR 대응치로 기업의 연례보고서상 드러나는 CSR 문구 횟수를 사용하였고, 독립변수는 기소여부를 터미변수로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공격적으로 조세 회피를 하는 기업은 탈세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평판을 완화시키기 위해 CSR활동에 적극적임을 발견하였다.

Hasseldine and Morris(2013)는 Sikka(2010)의 논문에 대한 답변서(reply)를 통해 ‘민주적으로 합의된 조세의 납부는 사회적 책임을 테스트하는 리트머스다’라고 표현하면서 조세 회피와 탈세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세 회피와 탈세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다년간 논쟁이 있어왔고, 합법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조세 회피의 개념과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탈세의 개념 간에 세금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고, 기만적이고 사기적이고 부패한 의도가 있었는지로 구별된다고 하였다. 탈세와 조세 회피는 의도, 세법에 대한 인식, 세법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려는 성향 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에 기초하여 식별할 수 있다고 하였다. Hasseldine and

Morris는 이 연구를 통해 조세 회피를 사회적 책임과 관련지을 경우 탈세와 조세 회피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Hoi et al.(2013)은 CSR 활동에 부정적인 기업일수록 공격적으로 조세 회피를 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여 기업문화가 조세 회피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이들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자료를 대상으로 종속변수인 조세 회피의 변수로 네 개를 사용하였고, CSR 활동에 부정적인 정도를 나타내는 주된 설명변수로 두개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여덟 개의 회귀식(두개는 로지스틱 회귀식, 여섯 개는 OLS 회귀식)을 기본 연구모델로 하여 자신들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즉 CSR 활동의 부정적인 정도를 나타내는 첫 번째 독립변수와 CSR 활동의 부정적인 정도가 과도한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인 두 번째 독립변수가 다른 모든 통제변수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네 개의 모든 종속변수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CSR 활동에 부정적인 기업일수록 보다 조세 회피에 공격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Watson(2015)은 기업의 소득수준이 현재 낮거나 미래에 낮을 경우로 예상될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조세 회피는 양(+)의 관계를 나타냈으나, 소득수준이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될 때 CSR과 조세 회피의 사이의 관계는 더 높은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양(+)의 관계가 사라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Watson은 조세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장 큰 비용 중 하나로 여기기 때문에 기업은 실적악화로 자원이 부족한 경우 조세 회피가 필요하고 부실한 기업은 높은 이익을 내는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세당국의 관심에서 멀리 있어 조세 회피가 더 자유롭다고 언급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조세 회피와 달리 소득과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약속이 필요하므로 CSR과 관련한 지출은 조세를 납부하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집행되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족한 자원 하에서 조세는 CSR보다 더 크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CSR을 감당할 수 있다면 좋은 기업 시민으로 행동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발표하였다.

Campbell and Helleloid(2016)은 영국 스타벅스의 조세 회피를 법의 잣대가 아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어 영국 스타벅스 스스로 조세납부를 이행하게 한 사례를 가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세 회피의 관계를 연구하였

다. 영국 스타벅스는 1998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3년 9월 29일까지 직영점 549개, 대리점 215개 총 764개의 매장을 오픈한 가운데 15년 동안 딱 한번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영국 스타벅스는 대개의 다국적기업들처럼 합법적인 조세 회피 관행¹⁶⁾(이전가격, 로열티 지불, 이자 비용)을 따랐다. 영국 스타벅스는 종업원을 위한 보험료 등 다양한 수익 파운드의 세금을 영국정부에 납부하였고 영국에 수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영국의 다른 기업으로부터 제품 및 용역을 구입함으로써 영국의 다른 기업의 소득을 증대시켜 영국의 세수를 창출하는데 기여해왔다고 주장하였다. 영국 대중들은 영국 스타벅스의 합법적인 법인세 회피를 ‘비도덕적 조세 회피’(immoral tax avoidance)라고 비난하면서 지역사회의 선량한 ‘시민’(Citizens)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항의하였다. 결국 영국 스타벅스는 영국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향후 2013년도, 2014년도에 이익이 없을지라도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납부하고 매년 3억 파운드의 투자와 고용 증진 등을 약속했다.

Davis et al.(2015)은 조세 회피측정치로 5개년 현금 유효세율(Cash ETR)과 조세 관련 로비에 지출한 비용을 사용하고 CSR의 대용치로 MSCI ESG STATS database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이 조세관련 로비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CSR에 적극적인 기업이 더 많은 조세 회피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증거는 CSR과 조세가 보완적이지 않고 대체재(substitutes)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16) 이전가격: 스타벅스 스위스는 900,000파운드에 구입한 커피를 네덜란드 스타벅스에 120만 파운드에 판매하고, 네덜란드 스타벅스는 로스팅하여 영국 스타벅스에 150만 파운드에 판매하였다. 스위스의 법인세율은 20%이며, 네덜란드는 25%, 영국은 24%이다. 스타벅스는 네덜란드와 특별 세금 협정을 맺어 네덜란드 표준 법인세율보다 낮게 적용받았다.

로열티 지불: 영국 스타벅스는 다른 기업에 브랜드 및 다양한 비즈니스 지원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대해 로열티를 지급했다. 이 수수료는 판매액의 6%에 해당한다.

이자 비용: 영국 스타벅스는 다른 기업에 채권이자(LIBOR+1.3%)보다 상당히 높은 금리(LIBOR+4%)로 이자비용을 지불했다.

3.1.2 국내 연구

CSR과 조세 회피 간의 관계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로 기은선(2012)은 기업의 조세 회피수준은 과세당국으로부터 적발되어 과징될 조세비용에 의해 결정되지만 예외적인 경우 탈세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나 주가의 하락, 매출의 감소 등과 같은 비조세비용에 의해 결정 된다고 하였다. CSR 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은 그러하지 아니한 기업에 비하여 비조세비용이 더 클 것이라고 하였다. 즉 적극적으로 CSR 활동에 임하는 기업은 큰 비조세비용 때문에 조세 회피에 더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CSR 활동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부족하거나 CSR 관련 지출이 미약하다면 CSR 활동 수준이 기업의 조세 회피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기간 동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산하 경제정의 연구소에서 공개한 2,002개의 기업-연도 표본에 대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KEJI 지수가 공개되는 상위 200개 기업뿐 아니라 미공개기업까지 표본에 포함하여 연구결과 의 내적 타당성을 도모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CSR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와 이를 10분위수로 재가공한 경우 모두에서 CSR 회귀계수는 통계적 확률 1% 수준에서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기은선은 적극적으로 CSR 활동에 임하는 기업일수록 조세 회피에 소극적이라고 결론지으면서 이는 비조세비용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성과가 높은 기업이 조세 회피 수준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조세비용 측면보다 비조세 비용의 측면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김경화와 권순창(2014)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조세 회피와의 관계에 이사회 특성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CSR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이 조세 회피로 인한 탈세를 하게 된다면 투자자와 이해관계자가 받게 되는 충격은 CSR 활동을 소극적으로 하는 기업이 받게 되는 충격에 비해 더 클 것이란 가정에 따라 기업의 CSR 활동수준은 기업의 조세 회피와 음(-)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CSR활동의 측정치는 경제정의지수(KEJI Index)를 사용하였다. 조세 회피는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해 과거 5년간의 누적유효법인세율과 누적현금유효법인세율을 사용하였고 이사회

특성은 독립성을 나타내는 이사회 내의 사외이사의 비율과 활동성을 측정하는 이사회의 개최횟수로 측정하였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계속 상장된 1,907개 기업-연도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5년간의 누적 유효법인세율에 대하여 CSR 회귀계수는 통계적 확률 1% 수준에서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누적현금유효법인세율의 경우 CSR 회귀계수는 통계적 확률 10% 수준에서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으로 CSR 활동에 임하는 기업일수록 조세 회피에 소극적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는 비조세비용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기업의 CSR 활동수준과 누적 유효법인세율의 관계에서 이사회 특성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누적현금유효법인세율에 대해서는 이사회 특성은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추가분석에서 기업지배구조 대용치인 외국인지분율과 최대주주지분율의 매개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외국인지분율은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최대주주지분율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세 회피 측정유형 모두에서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기업의 CSR 활동은 기업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쳐 조세 회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박준령과 김요환(2014)은 CSR 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조세 회피는 증가한다는 새로운 관점에서 실증연구를 하였다. 실상은 CSR 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은 그러하지 아니한 기업에 비하여 기부금 등의 비용이 과도하게 늘어나게 되면 기업의 현금 유출액의 증가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위한 재원의 마련을 위하여 조세 회피를 증가시키는 유인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사회적 책임 활동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 회피를 한다는 전제하에 연구하였다. 결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관련한 지출을 비용의 측면으로 인식하느냐,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출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조세 회피의 유인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공개한 ESG 평가지수의 평가대상이 된 3,015개의 기업-연도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유가증권 상장기업에 대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CSR 회귀계수가 통계적 확률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이 나타났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조세 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이며 CSR은 조세 회피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음(-)의 회귀계수를 보였다. 이는 사회적 책임 활동 수준이 조세 회피 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사회적 책임 활동 수준이 높은 기업은 CSR 활동으로 인해 얻는 긍정적인 효익이 더 크기 때문에 조세 회피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중 환경(E)과 지배구조(G)는 조세 회피와 유의한 음(-)의 관계로 나타났고 사회(S)는 조세 회피와 양(+)의 관계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세 회피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 인한 효익이 조세 회피로 인한 효익보다 더 큰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김정교 등(2014)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기간 중 유가증권 상장기업 600개를 표본으로 하여 사회적책임 측정치로 경제정의지수로, 조세 회피측정치로 Desai and Dharmapala(2006)의 BTD 잔차를 사용하여 실증한 결과 경제정의지수가 높은 그룹에서 유의한 음(-)의 값이 나타났으나 경제정의지수가 낮은 그룹에서는 결과값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최미화(2015)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수준이 조세 회피 및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486개를 표본으로 기업의 사회적책임이행수준은 경제정의지수로 조세 회피는 BTD 잔차를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CSR의 회귀계수 값이 유의한 음(-)의 값이 도출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수준이 높은 기업은 조세 회피 성향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였다.

김요환(2015)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측정치로 한국지배구조원에서 발표하는 ESG 지수를 참고하고 조세 회피측정치는 BTD의 잔차를 사용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코스닥기업 448개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할수록 적극적으로 조세 회피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는 사회적 책임 활동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오히려 조세 회피를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김규철과 최수비(2016)는 KEJI index인 7가지 경제정의지수의 점수를 CSR의 대용치로 사용하고 조세 회피는 Desai and Dharmapala(2006)의

BTD 잔차를 조세 회피의 측정치로 사용하여 실증 분석하다. 2012년에 실시한 제21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선정과 관련하여 공개한 CSR 우수기업 상위 200개 기업과 2013년에 실시한 제22회 경실련 좋은 기업상 선정과 관련하여 공개한 CSR 우수기업 상위 100개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클수록 조세 회피가 유의하게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표 3-1]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조세 회피 관련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	주요 연구내용
Lutz (2010)	- 조세피난처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에 비해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함
Sikka (2010)	- 주요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는 브로셔와 보고서를 내놓지만 대규모 조세 회피를 동반한다고 지적함
Watson (2011)	- CSR이 높은 우수기업은 다른 기업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CSR이 낮은 비우수기업은 유의하게 높은 조세 회피성향을 나타냄
Lanis and Richardson (2012)	- 공격적으로 조세 회피를 하는 기업과 비공격적인 기업의 CSR활동을 비교하여 연구한 결과 공격적으로 조세 회피를 하는 기업은 탈세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평판을 완화시키기 위해 CSR활동에 적극적임을 발견함
Hasseldine and Morris (2013)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이 높아질수록 조세 회피가 유의하게 더 낮아진다고 주장함
Hoi et al. (2013)	- 부정적인 CSR 활동을 과도하게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조세 회피에 보다 공격적이라는 증거를 제시함
Watson (2015)	- 기업의 소득수준이 현재 낮거나 미래에 낮을 경우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조세 회피는 양(+)의 관계를 보이거나, 소득수준이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될 때 CSR과 조세 회피의 사이의 관계는 더 높은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사라짐
Campbell and Helleloid (2016)	- 영국의 스타벅스는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공개하면서 이 전가격 등을 통해 합법적인 조세 회피를 하여 왔으나 영국 대중은 영국 스타벅스의 조세 회피를 사회적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탄함
Davis et al. (2016)	-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이 조세관련 로비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CSR에 적극적인 기업이 더 많은 조세 회피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함

연구자	주요 연구내용
기은선 (2012)	-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조세 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 사회적 책임 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일수록 조세 회피수준이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함
김경화와 권순창 (2014)	- 이사회 특성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조세 회피 변수의 관련성에 대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실증 분석한 결과 기업의 적극적인 CSR 활동은 기업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쳐 조세 회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함
박준령과 김요환 (2014)	- 사회적 책임 활동을 위한 재원의 마련을 위해 조세 회피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가설을 연구가설로 하였으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적극적일수록 조세 회피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함
김정교 등 (2014)	- 사회적 책임 측정치로 경제정의지수를 사용하여 실증한 결과 경제정의지수가 높은 그룹에서 유의한 음(-)의 값이 나왔으나 경제정의지수가 낮은 그룹에서는 유의한 결과값이 나오지 않음
최미화 (2015)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이 조세 회피 및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은 소극적 조세 회피성향을 나타내고 이러한 성향은 내재자본비용을 감소시키게 됨을 밝힘
김요환 (2015)	- 코스닥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할수록 적극적인 조세 회피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함
김규철과 최수비 (2016)	- 2012년 CSR 우수기업 상위 200개 기업과 2013년 CSR 우수기업 상위 100개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이 높아질수록 조세 회피가 유의하게 더 낮아짐

3.2 세무조사와 조세 회피에 관한 연구

세무조사와 조세 회피와의 관련성에 관한 선행연구로 심충진 등(2006)은 과거의 세무조사 경험 여부와 적발금액의 위험성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한 결과 과거에 세무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은 그러하지 아니한 기업에 비해서 기초자산으로 조정된 추정세액의 평균값은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는 한번 세무조사를 받은 경험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세무처리를 한 것일 수도 있고 세무 조사시 적발확률이 낮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한 결과일 수도 있다고 한다.

고성삼과 박상섭(2011)은 세무조사 전과 후의 조세 회피 차이에 관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세무조사 직전에 비해 세무조사 직후에 더 많은 조세 회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세무조사가 있고 난 후에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여 경영자가 세무조사 직후에 조세 회피 할 유인이 더 크다고 주장하였다.

박상섭(2012)은 세무조사 전과 후를 연도별로 조세 회피측정치와 세무조사 추정세액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세무조사 이전 2-3년 기간에는 조세 회피측정치와 세무조사추정세액 간에 양(+)의 값이 나타났다. 또한 조세 회피수준은 세무조사 3년 전에 가장 높았고, 세무조사 2년 전부터 감소하였다. 그리고 세무조사 1년 전에 조세 회피측정치와 세무조사추정세액 간에 음(-)의 값이 나타났다. 하지만 세무조사 후 1-2년 기간에는 조세 회피측정치와 세무조사추정세액 간에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무조사로 인한 적발 위험이 높은 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직전에 조세 회피 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정달성과 홍정화(2013)는 표본기업과 통제기업 간에 세무조사 직전 3년 전부터 세무조사 직후 1년까지 영구적 차이와 일시적 차이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세무조사 직전연도와 직후연도보다 세무조사연도에 더 적극적으로 조세 회피를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표본기업과 통제기업을 대상으로 회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세무조사기업의 경우 영구적 차이와 일시적 차이를 이용하여 세무조사연도에는 직전연도보다 공격적인 조

세 회피를 하였으며, 세무조사 직후연도에는 세무조사연도보다 영구적 차이와 일시적 차이가 증가하였다.

박주철과 이남우(2014)는 세무조사 경험이 다음 기간의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험 연구한 결과 세무조사를 받은 자는 또 다시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에 입을 수 있는 추징세액과 벌금 등의 가중된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2차 신고 시에는 신고소득액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세후 실 수령액을 높이기 위하여 2차 신고 시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신고소득액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철호(2016)는 국세청이 발표한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재무적 특성과 세무조사 전과 후의 조세 회피와의 관련성에 대해 실증 분석한 결과 세무조사 직전보다 세무조사연도에 조세 회피 수준이 감소함을 발견하였다. 신고소득율을 이용하여 조세 회피를 했던 기업들은 세무조사연도에도 역시 같은 변수를 이용하여 조세 회피를 감소시켰다. 그리고 유효세율의 경우 세무조사 직전에는 낮았다가 세무조사연도에 증가하고 세무조사 직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식 등(2017)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 중 세무조사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연도와 세무조사 직전과 직후의 연도를 비교하여 조세 회피 수준의 변화를 실증 분석한 결과 세무조사연도의 조세 회피 수준이 세무조사 전과 후의 조세 회피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상장기업의 경우에 세무조사연도의 조세 회피가 세무조사 직전보다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세무조사연도와 세무조사 직후 연도는 조세 회피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 세무조사연도의 조세 회피가 세무조사 직전 연도의 조세 회피보다 증가한다는 점에서는 유가증권상장기업과 같았으나 세무조사연도보다 세무조사 직후 연도에 조세 회피의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세무조사와 조세 회피에 관한 연구 요약

연구자	주요 연구내용
심충진 등 (2006)	- 과거에 세무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일수록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기초자산으로 조정된 추정세액의 평균값은 낮게 나타났음
고성삼과 박상섭 (2011)	- 세무조사 직전연도에 비해 세무조사 직후연도에 더 많은 조세 회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박상섭 (2012)	- 조세 회피는 세무조사 3년 전에 가장 많았고, 세무조사 2년 전부터 감소함 - 세무조사 1년 전 기간에 조세 회피측정치와 세무조사 추정세액 간에 음(-)의 관련성이 나타남 - 세무조사 후 1-2년 기간에는 조세 회피측정치와 세무조사추정세액 간에 관련성이 없었음
정달성과 홍정화 (2013)	- 세무조사연도에는 직전연도보다 공격적인 세무조정을 하였음 - 세무조사 직후 연도에는 세무조정이 세무조사연도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박주철과 이남우 (2014)	- 세무조사를 받은 자는 또다시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에 입을 수 있는 추정세액과 벌금 등 부담가중을 피하기 위하여 2차 신고 시에는 신고 소득액을 높이는 것으로 보이며, 반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자들은 세후 실 수령액을 높이기 위하여 2차 신고 시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신고소득액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음
나철호 (2016)	- 세무조사 직전 보다 세무조사 연도에 조세 회피 수준이 감소함 - 유효세율의 경우 세무조사 직전에는 낮게 나타나고 세무조사연도에 증가하여 세무조사 직후에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신영식 등 (2017)	- 유가증권상장기업의 경우 세무조사연도의 조세 회피가 세무조사 이전 보다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음 - 세무조사연도와 세무조사 직후 연도는 조세 회피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음

3.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 회피에 대한 과세당국의 강력한 행정행위인 세무조사가 기업의 CSR 활동 수준과 조세 회피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세무조사 더미변수를 조절변수로 투입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조세 회피 간 관계를 연구하였다.

둘째, 세무조사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직전 2개연도, 당해 조사연도, 세무조사 직후 2개 연도를 연속한 5개연도의 자료를 수집하여 세무조사 전과 후가 각각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조세 회피 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시도하였다.

셋째, 선행연구 대부분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정치로서 경제정의지수(KEJI Index)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김규철과 최수비(2016)는 KEJI지수는 상위 200개 기업에 한하여 공개되고 있어 표본선택에서의 편의(selection bias)가 존재하여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을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최미화(2015)는 최근 2010년부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국제표준인 ISO26000 등을 반영하여 사회적 책임지수를 평가하고 있어 이러한 지표로 표본의 확대가 이뤄진다면 좀 더 일반화된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한국지배구조원의 ESG의 평가등급을 CSR 활동 대용치로 사용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CSR의 대용치로 ESG의 평가모형을 사용한 또 다른 이유는 KEJI지수를 사용할 경우 내생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KEJI 지수의 평가항목은 건전성, 공정성, 사회공헌도, 소비자보호, 환경경영, 직원만족도로 모두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사회공헌도는 크게 고용평등 및 확대, 사회공헌활동, 그리고 국가재정기여도 즉 조세납부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조세납부수준이 CSR 평가의 항목으로 구성하고 있어 설명변수 CSR과 종속변수인 조세 회피와 동시적 인과관계에 놓여 내생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기은선(2012), 김경화와 권순창(2014)은 KEJI지수를 CSR의 대용치로 사용하면서 내생성을 통제하여 연구하였다.

넷째, 선행연구들은 감사보고서의 주석을 통해 과세소득자료¹⁷⁾를 수집할

수 있는 IFRS도입 전의 기간을 대상으로 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IFRS 도입 이후 기간인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절묘하게 한국지배구조원의 ESG 각 항목 모두에 대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이후 기간이기도 하다.

다섯째, 표본 선정 방식에 있어서 선행연구 방식에 추가하여 자본과다 계상 혐의 있는 분식기업을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회계감리결과제재 기업을 건건이 열람하여 제재사항 중 자본과다계상 혐의가 있는 기업은 제외하여 연구결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17)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사업보고서의 법인세 등 명세서에는 당기순이익, 세무조정내역,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과세표준, 당기부담법인세, 세액공제·감면 항목, 가산세, 특별부과세, 주민세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과세소득을 이용할 수 있었다. 사업보고서의 법인세등 명세서는 2002년까지만 제공되어 왔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을 통해 법인세부담액과 법인세비용의 차이를 이연법인세 변동액으로 조정한 내용과 법인세비용차감순이익과 과세소득간의 세무조정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7년 이후부터는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IV. 연구 설계

4.1 가설의 설정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세 회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다수의 연구에서 탈세행위가 드러날 경우 CSR 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은 CSR 활동에 무관심한 기업에 비하여 비조세비용이 클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 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일수록 조세 회피 수준이 낮다고 하였다(Hasseldine and Morris, 2013 : 김경화와 권순창, 2014 : 박준령과 김요환, 2014 : 최미화, 2015 : 김규철과 최수비, 2016). 그래서 기업의 CSR 활동을 강조하게 되면 조세 회피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도 하였다.(김정교 등, 2014). 김정교 등은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조세 회피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나,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에는 조세 회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 하였다. 김정교 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중요성은 과세당국의 각종 세무조사와 세법의 제·개정 없이도 기업 자발적으로 불법적인 조세 회피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어쨌든 CSR 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이든 소극적인 기업이든 기업의 조세 회피로 인한 탈세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 그 기업은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본세와 추가징수로 인한 가산세 등 금전적 조세비용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 실추, 대외신임도 하락,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비중의 감소 등 비실체적 조세비용의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김규철과 최수비, 2016).

기업은 CSR 활동에 소극적이더라도 조세 회피를 통해 현금유출인 법인세 비용을 줄여 기업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기은선, 2012), CSR 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세무계획을 통하여 과세당국의 감시를 피해 기업의 조세 회피를 할 유인은 충분하다(김규철과 최수비, 2016). 김요환(2015)은 코스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할수록 보다 적극적인 조세 회피를 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면서 기업의 CSR

활동으로 인한 비용에 대한 부담이 기업의 공격적인 조세 회피를 야기한다고 해석하였다. Watson(2015)은 기업의 소득수준이 낮거나 낮을 것으로 예측될 경우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조세 회피는 양(+)의 관계를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Watson은 조세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가장 큰 비용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하며 실적악화로 재원이 부족한 경우 조세 회피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부실한 기업은 높은 이익을 내는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세당국의 관심에서 멀리 있어 조세 회피가 더 자유롭고, 조세와 달리 CSR은 장기적인 약속이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소득과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CSR과 관련된 지출은 조세보다 더 엄격하게 집행한다고 하였다. Davis et al.(2016)은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들이 조세 관련 로비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높은 CSR 기업이 더 많은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CSR과 조세는 보완적이지 않고 대체재(substitutes)로 작용한다고 제안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기업이 CSR 활동 중의 일부로 조세 관련 활동을 고려하거나, 탈세가 적발될 경우 적극적으로 CSR 활동을 해 왔던 기업이 기업의 이미지 실추, 대외신임도 하락 등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세 회피는 음(-)의 관계에 있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거나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조세납부를 대체재로 인식하고 있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세 회피는 양(+)의 관계에 있다.

본 연구는 일관적이지 않은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세 회피의 관계에 대해 하나의 방향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가설 1을 다음과 같은 귀무가설의 형태로 설정한다.

가설 1 :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조세 회피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세무조사는 납세자들의 조세순응을 유도하기 위해 과세당국이 행사하는 강력하고 대표적인 정책수단이므로 기업은 조세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

정에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기업은 과거의 세무조사 경험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세무처리를 할 수도 있고(심충진 등, 2016 : 박주철과 이남우, 2014) 향후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적발확률이 낮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할 수도 있다(심충진 등, 2006). 과세당국은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를 저지르면 반드시 적발하기 마련이고, 탈세를 적발한 뒤에는 가산세까지 추징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짐을 확인시킴으로써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한다. 세무조사 기업은 세무조사로 인해 부정행위에 의한 탈세행위가 적발되면 본세는 물론 본세의 4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추가하여 추징당할 수도 있고 세무조사 기간 동안 조사공무원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 그에 응해야 하며 조사공무원이 출장하여 조사하는 경우 업무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심충진 등, 2006 : 박주철과 이남우, 2014). 결국 세무조사는 기업의 납세순응을 유도하여 기업의 조세 회피수준을 낮추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세무조사연도에 세무조사기업과 비세무조사기업 간 조세 회피 수준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지 실증할 필요가 있다. 세무조사는 조세 회피와 음(-)의 관계일 것으로 예측하여 가설 2를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2 : 세무조사기업은 비조사기업에 비해 세무조사연도에 조세 회피수준이 낮을 것이다.

세무조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는 찾기 어렵다. 다만 유사한 연구로 Lanis and Richardson(2012)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호주기업을 대상으로 조세 회피로 기소된 기업 20개와 일반 기업 20개를 연구 표본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소된 기업이 일반기업보다 CSR 활동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된 기업은 탈세로 인한 대중의 부정적 평판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CSR 활동에 더 적극적이라고 설명하였다. 박수정과 차희원(2009), 신찬유와 김정교(2011)는 부정적 사건의 야기로 인한 사회적 제재를 완화시키는데 CSR 활동이 기여한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

반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발견하거나,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6조 제2항¹⁸⁾의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게 된다. 조세범칙 조사결과 고발사유에 해당하면 과세당국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된다. 과세당국의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은 소송조건이 되는 고발로서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가 유효하다. 결국 조세범에 대한 검찰청의 기소는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가 전제됨을 알 수 있다. 기업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정기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조세 회피 혐의가 명확하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기업은 세무조사로 인하여 받게 되는 탈세 이미지를 걷어내기 위하여 사회적 책임 활동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탈세 무마용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면서 그 재원을 조세 회피, 즉 탈세하여 조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CSR 활동에 임하면서 조세 회피수준은 더 낮추는 형태를 취할 것이다. 세무조사기업은 CSR 활동을 조세납부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 받아들여 CSR과 조세 회피와의 관계에서 음(-)의 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가설 1에서 CSR과 조세 회피의 관계에 대해 하나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 귀무가설을 세웠다. 따라서 세무조사는 CSR과 조세 회피의 관계를 음(-)의 방향으로 조절하여 CSR과 조세 회피와의 관계가 양(+)인 경우에 양(+)의 관계를 완화시킬 것이고, CSR과 조세 회피의 관계가 음(-)인 경우에는 음(-)의 관계를 강화시킬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세무조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조세 회피와의 관계에서 조절효

18)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253호, 2018.5.2.) 제76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전환) ② 조사관서장은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로서 조세범칙혐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1. 조세범칙혐의 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제시 요구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장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수색 또는 일시보관이 필요한 경우
3.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장부·서류 등을 파기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사기피·방해 또는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처벌법」 제1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
5. 그 밖에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수법, 규모, 내용 등의 정황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가설 3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3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세 회피의 관계에 세무조사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무조사 전과 후에 따른 조세 회피수준의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세무조사 전과 후에 따른 조세 회피수준에 관한 선행연구로서 고성삼과 박상섭(2011)은 세무조사 전에 비하여 세무조사 후에 조세 회피를 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세무조사가 있고 난 후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경영자가 세무조사 직후에 조세 회피 할 유인이 더 크다고 설명하였다. 정달성과 홍정화(2013)는 세무조사연도에는 직전연도보다 공격적인 세무조정을 하였고 세무조사 직후 연도에는 세무조정이 세무조사연도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정달성(2013)은 과세당국의 전문 인력 부족 및 미숙련 조사요원 비중의 증가와 정기조사대상 선정의 비율이 전체 법인의 1%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세무조사기업은 세무조사연도에 예기치 않았던 법인세 등의 추정세액을 현금 납부하여야 하므로 세무조사연도에 공격적으로 세무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석하였다. 나철호(2016)는 세무조사 직전보다 세무조사연도에 조세 회피수준이 감소하고 세무조사 이후 점차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세무조사를 받는 순간만 잘 모면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세무조사 이후 연도에는 성실한 납세의무가 지속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신영식 등(2017)은 세무조사연도의 조세 회피가 세무조사 이전보다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세무조사연도와 세무조사 이후 연도 간에는 조세 회피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고 발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세무조사기업의 경우 세무조사연도에는 세무조사 적발위험이 거의 없으므로 재량적으로 조세 회피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정리하면 세무조사연도보다 직전연도에 더 조세 회피를 한다는 연구(나철호, 2016)도 있는 반면 조사연도에 더 조세 회피를 한다는 연구(정달성과 홍정화, 2013 : 신영식 등, 2017)도 있고, 직후연도가 조사연도에 비해 더 조세 회피를 한다는 연구(정달성과 홍정화, 2013 :

나철호, 2016)도 있다. 직전연도가 직후연도보다 더 조세 회피를 한다는 연구(고성삼과 박상섭, 2011)와 반대로 직후연도가 직전연도보다 더 조세 회피를 한다는 연구(정달성과 홍정화, 2013)도 있다. 따라서 세무조사전과 후에 따른 조세 회피수준의 변화에 관한 연구 결과가 일관적이지 아니하여 어느 방향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그리고 세무조사 전과 후에 CSR 수준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지 못하였다. 세무조사 관련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유사 선행연구로서 Lanis and Richardson(2012)의 연구는 조세 관련 기소기업이 비기소기업에 비해 부당한 행위로 인한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 사회적·환경적 공시를 늘린다고 보고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조세 회피와의 관계에 세무조사 전과 후는 각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므로 가설 4를 설정한다.

가설 4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세 회피의 관계에 세무조사 전 및 후는 각각 영향을 미칠 것이다.

4.2 변수 측정

4.2.1 종속 변수

실증분석을 위하여 종속변수인 조세 회피(TAXAVOID)¹⁹⁾를 Desai and Dharmapala (2006)가 제안한 방법과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 BTD를 변수로 하여 측정하였다²⁰⁾.

4.2.1.1 Desai and Dharmapala 의 조세 회피 측정치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이용되는 Desai and Dharmapala(2006)의 조세 회피측정치(TS)는 먼저 (식 1)에 따라 회귀분석으로 구한 값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Desai and Dharmapala(2006)는 재무보고이익(회계 이익)과 세무보고이익(과세소득)의 차이 중 재무보고의 이익 조정 측정치인 총발생액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에 해당하는 잔차값을 조세 회피로 측정하였다.

$$BTD_{i,t} = \beta_1 TA_{i,t} + \epsilon_t \quad (\text{식 1})$$

$BTD_{i,t}$: i기업의 t연도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기초총자산

$TA_{i,t}$: i기업의 t연도 총 발생액(당기순이익 - 영업현금흐름)/기초총자산

$\epsilon_t = TS_{i,t}$ = i기업의 t연도 조세 회피측정치

19) 조세 회피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조세 회피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측정치는 없고, 각각의 측정치는 상대적인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연구주제에 따라 다른 측정치들이 이용되고 있다. 유효법인세율(ETR)은 세전이익 단위당 평균세금부담을 의미하므로 ETR이 작을수록 조세 회피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현금유효법인세율(CASH ETR)은 법인세납부액을 세전이익으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세법상 가속상각이나 이익을 이연시키는 세무전략의 영향을 받으며, BTD는 conforming tax avoidance는 잡아낼 수 없고 세무이익이 다양한 기업들의 조세 회피활동을 비교할 경우에는 사용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BTD에서 비재량적 부분을 제외한 재량적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도 추가적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나, 조세 회피와 관계없는 부분을 제거하고 조세 회피로 인한 부분을 구분해낸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타당하므로 주요 분석에서 사용하고 있다(최미화, 2015).

20) 기은선(2012), 박준령과 김요환(2014)은 조세 회피를 Desai and Dharmapala (2006)가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김정교 등(2014), 김규철과 최수비(2016), 신영식 등(2017)은 조세 회피측정치로 Desai and Dharmapala (2006)가 제안한 방법과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인 BTD를 함께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4.2.1.2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를 사용한 조세 회피 측정치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는 (식 2)와 같이 측정한다.

$$BTD_t = (BI_t - TI_t) / Asset_{t-1} \quad (\text{식 2})$$

BI_t : t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

TI_t : t연도 과세소득²¹⁾(법인세부담액/법인세율)

$Asset_{t-1}$: t연도 기초총자산

본 연구에서는 과세소득(TI)²²⁾을 산정함에 있어 각 기업의 법인세비용, 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부채 계정과목을 활용하여 법인세비용에 이연법인세자산 증가분을 가산하고 이연법인세부채 증가분을 차감하여 법인세부담액을 구한다. [표 4-1]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이용하여 법인세부담액에 의해 역으로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계산식 [표 4-2]에 따라 추정과세소득을 산출하였다.

- 21) 한국의 경우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제공하는 사업보고서의 부속명세서인 법인세등명세서에는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 손금불산입을 더하고, 손금산입 익금불산입을 차감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구하고, 여기에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 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하는 과정을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세액공제, 세액감면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과세소득을 이용할 수 있었다. 사업보고서의 법인세등 명세서는 2002년까지만 제공되어 왔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을 통해 과세소득에 한 정보를 약할 수 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부터는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과세소득을 추정해야 한다. 따라서 2007년 이후부터 과세소득을 추정하는 경우에 기본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는 법인세부담액, 법인세비용, 이연 법인세자산·부채액,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이다(김노창과 최기호, 2014).

연도	제공보고서	과세소득정보
1998~2002	법인세등명세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세무조정사항,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과세표준, 세액공제, 감면 항목
2003~2007	감사보고서 주석	이연법인세 항목, 영구적·일시적 차이 전체금액, 세무조정 항목별 내용
2007~현재	감사보고서 주석	이연법인세 항목 또는 법인세비용 항목

출처 : 오익훈과 정재원(2016)

- 22) 과세소득×법인세율=법인세부담액이므로 추정과세소득=법인세부담액/법인세율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각 해당 연도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 및 지방소득세를 고려하는 전규안과 김철환(2008)의 방법을 이용하여 과세소득을 구하였다. 또한 법인세부담액은 법인세비용+(기말 이연법인세자산 - 기초 이연법인세자산) - (기말 이연법인세부채 - 기초 이연법인세부채)로 구한다.

[표 4-1] 연도별 법인세율(지방소득세 포함) 현황

구분	과세표준	법인세율	누진공제	세율(지방소득세포함)
2010년~2011년	2억원 이하	10%		11%
	2억원 초과	22%	24백만원	24.2%
2012년~	2억원 이하	10%		11%
	2억원 초과 2백억원 이하	20%	20백만원	22%
	2백억원 초과	22%	420백만원	24.2%

법인세부담액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계산식은 [표 4-2]와 같다.

[표 4-2] 추정과세소득의 계산식

구분	법인세부담액	추정과세소득	참고문헌
2010년 ~ 2011년	22백만원 이하	법인세부담액/11%	
	22백만원 초과	(법인세부담액+26.4백만원)/24.2%	
2012년~	22백만원 ²³⁾ 이하	법인세부담액/11% ²⁴⁾	신현결과 안준 (2017년)
	22백만원 초과 4,378백만원 이하	(법인세부담액+22백만원)/22%	
	4,378백만원 초과	(법인세부담액+462백만원)/24.2%	

23) 법인세부담액 22백만원은 과세소득 200백만원일 때의 법인세부담액이며, 법인세부담액 4,378백만원은 과세소득 20,000백만원일 때의 법인세부담액이다.

24) '법인세부담액=과세소득×해당구간 적용세율-누진공제'의 식에 기초하여 과세소득을 추정한다.

4.2.2 독립 변수

4.2.2.1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측정치²⁵⁾

최미화(2015)는 CSR의 측정치로 KEJI지수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료이기는 하나, 상위 200개 기업선정 등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규철과 최수비(2016)는 표본을 경제정의지수(KEJI)에 포함된 기업에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표본을 선택함에 있어 편의(selection bias)가 존재하므로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을 일반기업에 적용시키기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최미화(2015)는 최근 2010년부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국내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국제표준인 ISO26000 등을 반영하여 사회적 책임지수를 평가하고 있는데 향후 자료의 누적이 이뤄지고 이러한 지표로 표본의 확대가 된다면 좀 더 일반화된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측정치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 S, G 평가점수를 이용해 측정하고자 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유가증권시장기업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E, S, G 각 항목에 대한 평가지수를 공시해 오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 자료는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사회책임투자 지수(SRI)로도 활용하고 있다. CSR 측정치는 친환경평가(E), 사회책임평가(S), 기업지배구조평가(G)의 각 항목 점수를 단순 합산하여 이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4.2.2.2 세무조사

가설 2와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기업 중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당해 연도에 세무조사를 받았으면 '1', 아니면 '0'인 세무조사 더미변수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25) 기은선(2012), 김정교 등(2014), 김경화와 권순창(2014), 정우성(2015), 최미화(2015); 김규철과 최수비(2016) 등이 CSR의 대용치로 경제정의실천연합(경제실천연합) 산하 경제정의연구소에서 측정한 경제정의지수를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세무조사기업과 비조사기업의 조세 회피수준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2013년 세무조사 받은 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직후연도인 2014년도, 2015년도에서는 '0'으로 하여 비조사기업으로 구분하였다. 마찬가지로 2015년 세무조사 받은 기업의 경우에도 세무조사 직전연도인 2013년도, 2014년도에서는 '0'으로 하여 비조사기업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연도별 세무조사기업과 비조사기업을 비교분석하기 위함이다. 세무조사가 기업의 조세 회피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가설 2)를 분석하고, 세무조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조세 회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가설 3)를 분석하기 위해 세무조사 더미변수를 조절변수로 투입하였다.

4.2.2.3 세무조사 직전 연도, 세무조사 직후 연도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해 세무조사 받은 기업의 세무조사 전과 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조세 회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직전연도 더미변수인 ANTE와 세무조사 직후연도 더미변수인 POST를 조절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는 신영식 등(2017)의 연구를 참조하여 ANTE는 세무조사 직전 1년, 2년인 경우 '1', 당해 조사연도이거나 직후 연도이면 '0'으로 하고, POST는 세무조사 직후 1년, 2년인 경우 '1', 당해 조사연도이거나 직전 연도이면 '0'으로 하였다.

4.2.2.4 통제 변수

통제변수는 Watson(2011)의 연구에서 기업의 조세 회피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변수들을 활용하였다. 총자산수익률(ROA)이 높은 기업은 조세로 인한 현금유출을 줄이기 위해 조세 회피에 보다 적극적일 것이고(고성삼과 박상섭 2011), 반면에 부채비율(LEV)이 높은 기업은 이자비용을 통한 감세효과로 인해 조세 회피에 소극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감가상각대상자산(PPE)이 많은 기업은 투자세액공제 등의 세제혜택으로 인한 조세절감 효과가 있어 조세 회피에 소극적일 수도 있고 오히려 다양한 감가상각 방법을 통하

여 조세 회피를 고려할 여유가 많으므로 조세 회피에 보다 적극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김경화와 권순창 2014). 무형자산(INTAN)이 많은 기업은 미래의 성장기회를 위해 조세 회피에 적극적일 것이고, 매출액 변화율($\Delta SALES$)이 큰 기업은 매출증가에 따른 조세비용을 줄이기 위해 조세 회피에 적극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규모(SIZE)가 큰 기업은 규모의 경제효과로 인하여 우월한 조세전략을 수립할 수 있지만 반대로 정치적 비용 가설에 입각하여 기업규모(SIZE)가 클수록 조세 회피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박종국과 홍영은 2009). 수출(EXPR)비중이 높은 회사는 해외자회사와의 거래인 경우 조세 회피의 기회가 존재하나, 제3의 기업과의 거래인 경우 조세 회피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그리고 회계 또는 세법규정에 따라 산업별, 연도별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ID²⁶⁾는 산업별 차이를, YD는 연도별 차이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26) 김정교 등(2014)은 KEJI지수를 사용하면서 표본수 부족을 이유로 산업별 차이를 통제하지 않았다.

4.3 연구 모형

4.3.1 <가설 1>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조세 회피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세 회피의 대응치로 TS와 BTD를 사용하였고, 한국지배구조원에서 산정한 E, S, G 점수의 합계를 평균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대응치로 사용하여 다음의 (식 3)을 설정하였다.

$$TAXAVOID(TS, BTD)_{i,t} = \alpha + \beta_1 CSR(E, S, G)_{i,t} + \beta_2 ROA_{i,t} + \beta_3 LEV_{i,t} + \beta_4 PPE_{i,t} + \beta_5 INTAN_{i,t} + \beta_6 SIZE_{i,t} + \beta_7 \Delta SALES_{i,t} + \beta_8 EXPR_{i,t} + \sum YD_{i,t} + \sum ID_{i,t} + \epsilon \quad (\text{식 3})$$

<종속 변수>

TAXAVOID : 조세 회피측정치(4.3.1 종속변수 참조)

TS : Desai and Dharmapala(2006) 조세 회피 측정방법

BTD :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

<독립 변수>

CSR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점수의 합계

<통제 변수>

ROA : 총자산이익률(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LEV :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PPE : 감가상각대상자산비율((유형자산-토지-건설중인자산)/기초총자산)

INTAN : 무형자산비율(무형자산/기초총자산)

SIZE : 기업의 규모(총자산의 자연로그값)

Δ SALES : 매출액변화율(Δ 매출액/전기 매출액)

EXPR : 수출비율(수출액/당기 매출액)

YD : 연도 더미

ID : 업종 더미

4.3.2 <가설 2>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해당연도에 세무조사 기업은 비조사기업에 비해 조세 회피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의 (식 4)를 설정하였다. TIV_event의 계수가 음(-)의 값이 나오면 가설 2를 지지하게 된다.

$$TAXAVOID(TS, BTD)_{i,t} = \alpha + \beta_1 TIV_event_{i,t} + \beta_2 ROA_{i,t} + \beta_3 LEV_{i,t} + \beta_4 PPE_{i,t} + \beta_5 INTAN_{i,t} + \beta_6 SIZE_{i,t} + \beta_7 \Delta SALES_{i,t} + \beta_8 EXPR_{i,t} + \sum YD_{i,t} + \sum ID_{i,t} + \epsilon \quad (\text{식 4})$$

변수의 정의: (식 3) 참조, 더미변수 TIV_event는 해당연도에 세무조사 받은 기업이면 1, 아니면 0

4.3.3 <가설 3>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세무조사가 기업의 사회적 활동과 조세 회피 수준간의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세무조사 더미변수를 조절변수로 투입하는 다음의 (식 5)를 설정하였다. 상호작용 항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가설 3을 지지하게 된다.

$$TAXAVOID(TS, BTD)_{i,t} = \alpha + \beta_1 CSR(E, S, G)_{i,t} + \beta_2 TIV_event_{i,t} + \beta_3 CSR \times TIV_event_{i,t} + \beta_4 ROA_{i,t} + \beta_5 LEV_{i,t} + \beta_6 PPE_{i,t} + \beta_7 INTAN_{i,t} + \beta_8 SIZE_{i,t} + \beta_9 \Delta SALES_{i,t} + \beta_{10} EXPR_{i,t} + \sum YD_{i,t} + \sum ID_{i,t} + \epsilon \quad (\text{식 5})$$

변수의 정의: (식 3), (식 4) 참조, 다만 CSR×TIV_event는 상호작용 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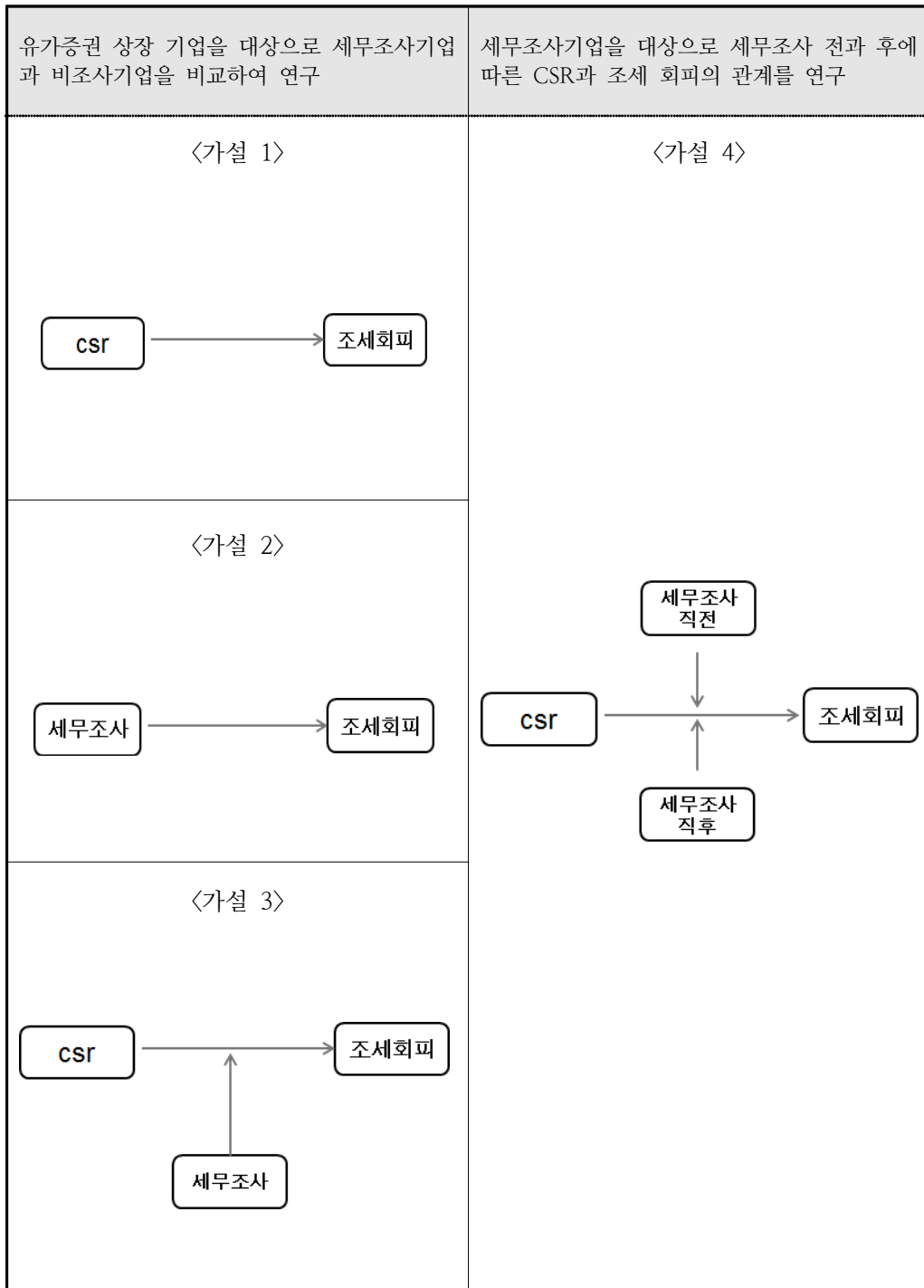
4.3.4 <가설 4>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세무조사 전과 후에 의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조세 회피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세무조사 직전 더미변수와 세무조사 직후 더미변수를 조절변수로 투입하는 다음 (식 6)을 설정하였다. 상호작용 항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가설 4를 지지하게 된다.

$$\begin{aligned} TAXA VOID(TS, BTD)_{i,t} = & \alpha + \beta_1 CSR(E, S, G)_{i,t} + \beta_2 ANTE_{i,t} + \beta_3 POST_{i,t} + \\ & \beta_4 CSR \times ANTE_{i,t} + \beta_5 CSR \times POST_{i,t} + \beta_6 ROA_{i,t} + \\ & \beta_7 LEV_{i,t} + \beta_8 PPE_{i,t} + \beta_9 INTAN_{i,t} + \beta_{10} SIZE_{i,t} + \\ & \beta_{11} \Delta SALES_{i,t} + \beta_{12} EXPR_{i,t} + \sum YD_{i,t} + \sum ID_{i,t} + \epsilon \end{aligned} \quad (\text{식 } 6)$$

변수의 정의: (식 3), (식 4) 참조, 다만 더미변수 ANTE²⁷⁾는 세무조사 직전 연도(각1년, 2년 전)이면 1, 조사연도이거나 직후연도이면 0, 더미변수 POST는 세무조사 직후연도(각1년, 2년 후)이면 1, 조사연도이거나 직전연도이면 0

27) 나철호 등(2016)의 '세무조사 선정기준과 조세 회피와의 관계 및 추정기업예측모형'에서 연구모형을 참조하여 ANTE, POST 더미변수를 생성하였다.



[그림 4-1] 연구 모형

4.4 표본의 선정

4.4.1 <가설 1>, <가설 2>, <가설 3>의 검증을 위한 표본 선정

본 연구는 가설 1과 가설 2, 그리고 가설 3의 검증을 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 중에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 1) 결산 월이 12월이 아닌 기업 제외
- 2) 금융업 제외
- 3) 자본잠식기업 및 과세소득이 음(-)인 기업 제외
-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자료를 입수할 수 없는 기업 등 제외
- 5) ESG 점수가 부여되지 않은 기업 제외
- 6) 자본과다계상(분식회계) 기업 제외

금융업은 재무제표의 양식, 계정과목의 성격 등이 일반 제조업과 상이하여 다른 업종의 기업들과 비교,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또한 결산 월 차이에 따른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표본을 12월 결산법인으로 한정하였다. 자본잠식기업 또는 과세소득이 음(-)인 기업은 조세 회피의 동기가 낮기 때문에 표본에서 제외하였다.(Desai & Dharmapala, 2006: 고윤성 등, 2007).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 동안 세무조사 받은 기업을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공시²⁸⁾된 자료를 통해 파악하였으나 12개 기업에 불과하여 각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세무조사 이력이 기재되었거나 세무조사관련 용역 수수료를 지급한 내역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 받은 기업으로 추출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금융감독

28)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서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손익에 관한 사항으로 자기자본의 100분의 5, 다만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벌금, 과태료, 추징금 또는 과징금 등이 부과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그 사유 발생일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따라서 기업이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로 인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5 다만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추정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의 경영자는 이와 같은 정보를 공시해야만 한다.

원 홈페이지에서 회계감리결과제재 기업으로 게시되어 있는 기업 중 자본과 다계상(분식회계) 혐의 사실이 확인 된 11개의 기업을 표본에서 제외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한 표본을 선정하고자 노력하였다. 표본기업수는 [표 4-3]과 같다.

[표 4-3] <가설 1>, <가설 2>, <가설 3>의 검증을 위한 표본의 선정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유가증권 상장기업	2,320	770	773	777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기업(-)	102	22	26	54
금융업(-)	134	48	46	40
과세소득이 음(-)인 기업(-)	473	150	160	163
재무자료 미입수 기업(-)	79	23	33	23
ESG 점수 미부여 기업(-)	832	298	268	266
최종표본기업	689	233	236	220
표본세무조사기업	31	11	16	4

표본기업의 산업별 분포 비율은 [표 4-4]와 같다.

[표 4-4] 표본기업의 산업별 분포

산업종류	기업수(개)	비율(%)
농업, 임업 및 어업	8	1.16
제조업	454	65.8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0	2.90
건설업	31	4.50
도매 및 소매업	71	10.30
운수 및 창고업	19	2.76
숙박 및 음식점업	3	0.44
정보통신업	33	4.79
부동산업	1	0.1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9	4.2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6	0.87
교육서비스	5	0.7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	0.8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	0.44
합 계	689	100.00

본 연구에서 극단치(Outlier)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상위, 하위 각 1%에 해당하는 표본의 값을 상위, 하위 각 1% 값으로 조정(winsorization)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표본에 포함된 기업-연도 수는 689개이다.

4.4.2 <가설 4>의 검증을 위한 표본 선정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해 세무조사 받은 93개 기업 중 조사연도, 조사

직전 2개연도와 조사 직후 2개연도, 총 5개의 사업연도를 연속하여 앞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다만, 세무조사 기업은 조세 회피의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이므로 5개 사업연도 중 자본잠식 또는 과세소득이 음(-)인 기업이더라도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표본수의 한계로 산업별, 연도별 차이에 대하여 통제하지 아니하였다. [표 4-3]의 표본 세무조사기업과 [표 4-5]의 표본 세무조사기업은 연구 목적에 입각하여 다른 조건하에서 선정된 표본으로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자본과다계상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없다. 본 연구에서 극단치(Outlier)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상위, 하위 각 1%에 해당하는 극단치를 상위, 하위 각 1% 값으로 조정(winsorization)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표본에 포함된 기업-연도 수는 185개이다.

[표 4-5] <가설 4> 검증을 위한 표본의 선정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세무조사기업	93	-	-	22	34	37	-	-
표본세무조사기업	37	-	-	8	19	10	-	-
최종표본기업	185	8	27	37	37	37	29	10

연구 목적	세무조사기업을 중심으로 CSR과 조세 회피의 관계를 연구
연구 가설	〈가설 1〉 CSR과 조세 회피의 관련성 〈가설 2〉 세무조사와 조세 회피의 관련성 〈가설 3〉 CSR과 조세 회피 간 세무조사의 조절효과 〈가설 4〉 CSR과 조세 회피 간 세무조사 직전 및 직후의 조절효과 〈추가분석〉 기업집단 조절효과, 기업성장성 조절효과 등
종속 변수	조 세 회 피
측정 치	① Desai and Dharmapala(2006)의 방법 ② BTD (회계 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연구 내용	○ 세무조사 여부 관련: [가설 1], [가설 2], [가설 3] ○ 세무조사 전·후 관련: [가설 4] ○ 추가분석: 기업집단 관련, 기업성장성 관련
연구 표본	2013~2015년 유가증권 상장 기업: 〈가설 1〉, 〈가설 2〉, 〈가설 3〉 2013~2015년 유가증권 상장 기업 중 세무조사 받은 기업: 〈가설 4〉
검증 방법	① 단변량 분석 ② 상관 분석 ③ 다중회귀 분석

[그림 4-2] 실증분석의 체계도

V. 실증 분석

5.1 변수의 기술 통계

5.1.1 주요변수의 기술 통계

[표 5-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의 기술통계량을 요약하고 있다. 먼저 종속변수인 조세 회피측정치 TS의 평균은 0.0041이고 BTD의 평균은 -0.0187이다. TS가 BTD보다 조세 회피측정치가 높다. CSR의 평균과 중위수는 37.0816과 33.9367, 표준편차는 12.3663이다. 최댓값은 77.6467, 최소값은 16.3967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점수차이는 61.2500이며 중위수는 33.9367이다. 기업마다 CSR 활동 수준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무조사 더미변수 TIV_event는 전체 표본 기업 수 689개 중 세무조사 기업 31개로서 전체표본 대비 4.5%이며 백분위 75% 값까지 0이다.

[표 5-1] 주요변수의 기술적 통계치

변수	N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최솟값	25%	75%	최댓값
TS	689	0.0041	0.0110	0.0489	-0.1849	-0.0159	0.0338	0.1068
BTD	689	-0.0187	-0.0078	0.0517	-0.2754	-0.0319	0.0078	0.0855
CSR	689	37.0816	33.9367	12.3663	16.3967	28.5342	41.3867	77.6467
TIV_event	689	0.0450	0.0000	0.2074	0.0000	0.0000	0.0000	1.0000
ROA	689	0.0379	0.0351	0.0603	-0.1616	0.0099	0.0662	0.2217
LEV	689	0.4029	0.4047	0.1866	0.0199	0.2534	0.5403	0.8514
PPE	689	0.1955	0.1774	0.1335	0.002	0.0852	0.2882	0.5349
INTAN	689	0.0233	0.0096	0.0348	0.0000	0.0038	0.0280	0.1899
SIZE	689	20.7856	20.502	1.3989	18.0285	19.8428	21.5464	24.7788
△SALES	689	0.0070	0.0078	0.1279	-0.3502	-0.0572	0.0710	0.4152
EXPR	689	0.0973	0.0000	0.2218	0.0000	0.0000	0.0210	0.9678

(변수의 정의)

TS	: Desai and Dharmapala(2006) 조세 회피 측정방법
BTD	: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
CSR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점수의 총합계(100점 기준 환산)
TIV_event	: TIV_event는 해당연도에 세무조사 받은 기업이면 1, 아니면 0
ROA	: 총자산이익률(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LEV	: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SIZE	: 기업의 규모(총자산의 자연로그값)
PPE	: 감가상각대상자산 비율((유형자산-토지-건설중인 자산)/기초총자산)
INTAN	: 무형자산비율(무형자산/기초총자산)
△SALES	: 매출액변화율(△매출액/전기 매출액)
EXPR	: 수출비율(수출액/당기 매출액)

5.2 변수의 상관 분석

[표 5-2]는 피어슨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이다. 조세 회피측정치 TS는 BTD, CSR, ROA, PPE, INTAN, Δ SALES와 양(+)의 상관성을 가지지만 LEV와 EXPR은 음(-)의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TD, CSR, ROA, LEV, PPE, SIZE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나, INTAN, Δ SALES, EXPR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조세 회피측정치 BTD 또한 CSR, ROA, PPE, INTAN, Δ SALES와 양(+)의 상관성을 가지지만 LEV와 EXPR은 음(-)의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ROA, LEV, PPE, Δ SALES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고, SIZE는 5%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성을 드러내지만, CSR, INTAN, EXPR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수익률이 높고,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비율이 높으며,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조세 회피측정치가 높아지고,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조세 회피측정치는 낮아짐을 의미한다. 주요 설명변수인 CSR은 조세 회피측정치 TS와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가지지만 다른 조세 회피측정치 BTD와는 양(+)의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유의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러한 상관분석은 다른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의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표 5-2] 주요 변수의 Pearson 상관관계

(N=689 전체표본)

변수	TS	BTD	CSR	ROA	LEV	PPE	INTAN	SIZE	△SALES	EXPR
TS	1									
BTD	0.889*** (0.000)	1								
CSR	0.137*** (0.000)	0.043 (0.264)	1							
ROA	0.470*** (0.000)	0.598*** (0.000)	0.063 (0.097)	1						
LEV	-0.184*** (0.000)	-0.242*** (0.000)	0.109*** (0.004)	-0.449*** (0.000)	1					
PPE	0.239*** (0.000)	0.120*** (0.002)	0.205*** (0.000)	0.071* (0.064)	0.068* (0.073)	1				
INTAN	0.051 (0.183)	0.004 (0.916)	0.054 (0.155)	-0.002 (0.965)	0.081** (0.034)	0.024 (0.534)	1			
SIZE	0.144*** (0.000)	0.082** (0.032)	0.656*** (0.000)	0.021 (0.591)	0.223*** (0.000)	0.164*** (0.000)	0.091** (0.017)	1		
△SALES	0.027 (0.481)	0.101*** (0.008)	-0.040 (0.298)	0.313*** (0.000)	-0.059 (0.123)	-0.019 (0.616)	0.168*** (0.000)	0.002 (0.957)	1	
EXPR	-0.059 (0.120)	-0.029 (0.440)	0.072* (0.058)	0.056 (0.141)	-0.016 (0.676)	0.043 (0.258)	-0.098** (0.010)	0.003 (0.930)	-0.048 (0.212)	1

주1) 변수의 정의: [표 5-1] 참조

주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양측검정), ()내는 유의확률

5.3 회귀 분석

5.3.1 <가설 1>의 검증(CSR과 조세 회피의 관련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세 회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ROA, LEV, PPE, INTAN, SIZE, Δ SALES, EXPR, 연도, 산업을 통제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검토하기 위해 VIF지수를 살펴본 결과 1.099~2.282로 모두 10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어 보인다. [표 5-3]은 회귀분석 한 실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모형 1에서는 Desai and Dharmapala(2006)의 BTD 잔차를 사용한 종속변수 TS에 대하여 회귀분석 한 결과이며, 모형 2는 종속변수 BTD(Book Tax Difference)에 대하여 회귀분석 한 결과이다. 모형 1과 모형 2에서 설명변수 CSR의 회귀계수(β)는 0.110과 0.022으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형 2에서는 유의하지 아니하였고 모형 1에서는 통계적 확률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모형 1과 모형 2에서 모두 ROA, INTAN, EXPR은 음(-)의 값이, LEV는 양(+)의 값이 나타났지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 1과 모형 2에서 모두 PPE가 통계적 확률 5%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이 나타난 것은 세법에서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투자세액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굳이 조세 회피에 적극적일 이유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모형 1과 모형 2에서 모두 SIZE가 통계적 확률 10%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이 나타난 것은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규모의 경제효과로 인하여 우월한 조세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Δ SALES는 모형 1과 모형 2에서 양(+)의 값이 나왔으나 모형 2에서만 통계적 확률 5%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출액변화율이 큰 기업일수록 매출증가에 따른 조세비용을 줄이기 위해 조세 회피에 적극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모형 1과 모형 2의 설명력 R^2 는 각각 11.15 %($p < 0.001$)와 7.3%($p < 0.001$)로 다소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탈세가 적발될 경우 적극적으로 CSR활동을 해 왔던 기업이 기업의 이미

지 실추, 대외신임도 하락 등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되거나 기업이 CSR 활동 중의 일부로 조세 관련 활동을 고려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세 회피는 음(-)의 관계로 나타날 것이고(Hasseldine and Morris, 2013 : 김경화와 권순창, 2014 : 박준령과 김요환, 2014 : 최미화, 2015 : 김규철과 최수비, 2016), 기업이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거나(김요환, 2015 : Watson, 2015) 기업이 사회적 책임 활동을 조세납부의 대체재로 인식하고 있다면(Davis et al, 2016)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세 회피는 양(+)의 관계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된다. 따라서 가설 1의 검증 결과가 대체로 양(+)의 관계로 나타난 것은 기업이 CSR 활동에 필요한 자원 마련을 위해 조세 회피를 하거나 조세납부를 사회적 책임 활동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CSR 활동이 조세납부를 대체한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의 적극적인 CSR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 일례로 과세당국은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정책을 지속하여 실시하고 있다. 기업은 이런 세정지원정책을 이용해 조세 회피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기업이 조세 회피한 대표적인 사례로 엔론과 영국스타벅스를 들 수 있다. 분식회계 파문으로 결국 파산에 이른 엔론이 미국 사회에서 사회공헌을 강조해 온 대표적인 기업이었음을 알고 있다. 엔론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4년 동안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는 엔론이 국외 조세피난처에 881개의 자회사를 설립해 공격적인 조세 회피 전략을 펼친 결과다. 앞의 선행연구에서 영국 스타벅스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영국에서 총 764개의 매장을 오픈한 가운데 15년 동안 딱 한번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을 접하였다. 가설 1의 검증결과는 사회적 책임 활동에 적극적인 기업들이 조세관련 로비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는 Davis et al.(2016)의 연구결과와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모형 1에서 가설 1의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

[표 5-3] <가설 1>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TAXA VOID(TS, BTD)_{i,t} = \alpha + \beta_1 CSR(E, S, G)_{i,t} + \beta_2 ROA_{i,t} + \beta_3 LEV_{i,t} + \beta_4 PPE_{i,t} + \beta_5 INTAN_{i,t} + \beta_6 SIZE_{i,t} + \beta_7 \Delta SALES_{i,t} + \beta_8 EXPR_{i,t} + \sum YD_{i,t} + \sum ID_{i,t} + \epsilon \quad (\text{식 3})$$

변수	예상부호	모형 1 (종속변수: TS)		모형 2 (종속변수: BTD)	
		계수	t값	계수	t값
(상수)		-0.075**	-2.180	-0.090**	-2.407
CSR	±	0.110**	2.004	0.022	0.393
ROA	+	-0.052	-1.154	-0.068	-1.492
LEV	-	0.000	0.002	0.003	0.067
PPE	±	-0.125**	-2.943	-0.097**	-2.215
INTAN	+	-0.053	-1.240	-0.068	-1.551
SIZE	±	0.098*	1.809	0.099*	1.794
△SALES	+	0.030	0.744	0.128**	3.113
EXPR	±	-0.059	-1.531	-0.019	-0.495
YD		포함	포함	포함	포함
ID		포함	포함	포함	포함
F값		3.625***		2.293***	
R ²		0.111		0.073	
N		689		689	

주1) 변수의 정의: [표 5-1] 참조

주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양측검정)

5.3.2 <가설 2>의 검증(세무조사와 조세 회피의 관련성)

세무조사와 조세 회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검토하기 위해 VIF지수를 살펴본 결과 1.051~1.507로 모두 10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어 보인다. 세무조사 변수 TIV_event는 유가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기업 중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 동안 당해 연도에 세무조사를 받았으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이다. 2013년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직후연도인 2014년도와 2015년도에서는 '0'인 값으로 하여 비세무조사기업으로 구분하였다. 마찬가지로 2015년도에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이면 세무조사 직전연도인 2013년도, 2014년도에서는 '0'인 값으로 하여 비세무조사기업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연도별 세무조사기업과 비조사기업을 비교분석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세무조사 변수 TIV_event의 회귀계수(β) 값이 음(-)의 값이 나타나면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이 그러하지 아니한 기업보다 조세 회피를 덜한다는 가설 2는 지지하게 된다. [표 5-4]는 회귀분석 한 실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 모형 1과 모형 2에서 TIV_event의 회귀계수(β)는 -0.173과 -0.175로 모두 통계적 확률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세당국의 강력한 행정행위인 세무조사는 기업으로 하여금 조세 회피 수준을 낮추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모형 1과 모형 2의 설명력 R^2 는 각 33.7%($p < 0.001$)와 42.8%($p < 0.001$)로 안정적인 편이다.

세무조사와 조세 회피가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세무조사를 통해 부정행위에 의한 탈세행위가 적발되면 본세의 4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추징당하고, 세무조사기간 동안 조사공무원의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공무원이 출장하여 조사하는 경우 업무를 방해받는다. 따라서 학습효과에 의해 또 다시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는 심충진 등(2006)의 연구와 박주철과 이남우(2014)의 연구에서 실험을 통하여 검증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대부분의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은 당해 연도에 추정세액을 납부하게 됨으로서 조세 회피추정치가 낮아졌을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

다. 이러한 이유들로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비조사기업에 비해 조세 회피측정치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석결과 가설 2는 지지되었다.

[표 5-4] <가설 2>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TAXAVOID(TS, BT D)_{i,t} = \alpha + \beta_1 TIV_event_{i,t} + \beta_2 ROA_{i,t} + \beta_3 LEV_{i,t} + \beta_4 PPE_{i,t} + \beta_5 INTAN_{i,t} + \beta_6 SIZE_{i,t} + \beta_7 \Delta SALES_{i,t} + \beta_8 EXPR_{i,t} + \sum YD_{i,t} + \sum ID_{i,t} + \epsilon \quad (\text{식 4})$$

변수	예상부호	모형 1 (종속변수: TS)		모형 2 (종속변수: BT D)	
		계수	t값	계수	t값
(상수)		-0.091***	-4.21	-0.090***	-3.419
TIV_event	-	-0.173***	-4.672	-0.175***	-4.657
ROA	+	-0.040	-0.909	-0.052	-1.159
LEV	-	-0.003	-0.069	0.004	0.101
PPE	±	-0.101**	-2.426	-0.087**	-2.019
INTAN	+	-0.032	-0.755	-0.050	-1.157
SIZE	±	0.182***	4.665	0.125***	3.125
△SALES	+	0.019	0.483	0.120***	2.973
EXPR	±	-0.062	-1.631	-0.026	-0.684
YD		포함	포함	포함	포함
ID		포함	포함	포함	포함
F값		13.457***		19.784***	
R ²		0.337		0.428	
N		689		689	

주1) 변수의 정의: [표 5-1] 참조, 다만, TIV_event는 세무조사 더미변수

주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양측검정)

5.3.3 <가설 3>의 검증(CSR과 조세 회피 간 세무조사의 조절효과)

CSR과 조세 회피 간 세무조사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독립변수 CSR을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하여 투입하고 VIF지수를 살펴본 결과 1.052~2.305로 모두 10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어 보인다. 처음에 통제변수와 독립변수 CSR을 넣고, 다음 단계에서 조절변수인 세무조사 더미변수 TIV_event를,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상호작용 항 CSR×TIV_event를 넣어 회귀분석 하였다. [표 5-5]는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단계의 회귀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위계적 입력에 의한 회귀분석에 의한 조절효과분석에서 조절효과의 유의도를 보는 방법에는 R^2 변화량이 유의적인가와 상호작용 항의 계수가 유의적인가를 통해 보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 R^2 변화량이 유의적인가를 보면 모형 1의 R^2 변화량은 0.2%(유의확률 0.224)이고 모형 2의 R^2 변화량은 0.3%(유의확률 0.128)이다. 모형 1과 모형 2 모두 설명력은 증가하였으나 그 변화량이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상호작용 항의 계수가 유의적인가를 보면 모형 1과 모형 2에서 상호작용 항 CSR×TIV_event의 회귀계수(β)는 -0.046과 -0.059로 모두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조세 회피의 관계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조절작용을 하는지 실증분석 한 결과,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3은 기각되었다. 그래서 집단 간 CSR과 조세 회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세무조사기업과 비조사기업을 구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조세 회피 측정치인 TS에 대하여 CSR의 회귀계수(β)는 세무조사기업에서는 -0.724(t값= -1.310)가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아니하였고, 비조사기업에서는 통계적 확률 5% 수준에서 유의한 0.109(t값= 1.945)로 나타났다. 종속변수를 달리 하여 조세 회피측정치인 LTD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CSR의 회귀계수(β)는 비조사기업에서 0.022(t값= 0.377)가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아니 하였고, 세무조사기업에서는 통계적 확률 5% 수준에서 유의한 -1.138(t값= -2.862)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조사기업에서는 CSR이 조세 회피에 음(-)의 영향을 미치

고, 비조사기업에서는 CSR이 조세 회피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가설 3 검증 결과 사회적 책임 활동과 조세 회피의 관계에 세무조사의 조절효과가 있다고 말 할 수는 없으나, 비조사기업은 조세 회피측정치인 TS에 대하여 CSR이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고([표 5-6] 참조), 세무조사기업은 조세 회피측정치인 BTD에 대하여 CSR이 유의한 음(-)의 관계로 나타나([표 5-7] 참조)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5] <가설 3>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TAXA VOID(TS, BTD)_{i,t} = \alpha + \beta_1 CSR(E, S, G)_{i,t} + \beta_2 TIV_event_{i,t} + \beta_3 CSR \times TIV_event_{i,t} + \beta_4 ROA_{i,t} + \beta_5 LEV_{i,t} + \beta_6 PPE_{i,t} + \beta_7 INTAN_{i,t} + \beta_8 SIZE_{i,t} + \beta_9 \Delta SALES_{i,t} + \beta_{10} EXPR_{i,t} + \sum YD_{i,t} + \sum ID_{i,t} + \epsilon \quad (\text{식 5})$$

변수	예상 부호	모형 1 (종속변수: TS)		모형 2 (종속변수: BTD)	
		계수	t값	계수	t값
(상수)		-0.075*	-1.910	-0.105**	-2.476
CSR	±	0.104*	1.910	0.018	0.318
TIV_event	-	-0.166***	-4.490	-0.171***	-4.535
CSR×TIV_event	±	-0.046	-1.218	-0.059	-1.524
ROA	+	-0.051	-1.137	-0.061	-1.349
LEV	-	-0.004	-0.086	-0.001	-0.032
PPE	±	-0.108**	-2.567	-0.084*	-1.932
INTAN	+	-0.040	-0.947	-0.054	-1.257
SIZE	±	0.120**	2.248	0.124**	2.268
△SALES	+	0.026	0.657	0.122***	3.014
EXPR	±	-0.067*	-1.773	-0.029	-0.741
ID		포함	포함	포함	포함
YD		포함	포함	포함	포함
F값		4.332***		3.134***	
R ²		0.140		0.106	
R ² 변화량		0.002		0.003	
N		689		689	

주1) 변수의 정의: [표 5-1] 참조. 다만, CSR×TIV_event : 상호작용 항

주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양측검정)

[표 5-6] 비조사기업과 세무조사기업의 회귀분석 결과(1)

$$TAXAVOID(TS)_{i,t} = \alpha + \beta_1 CSR(E, S, G)_{i,t} + \beta_2 ROA_{i,t} + \beta_3 LEV_{i,t} + \beta_4 PPE_{i,t} + \beta_5 INTAN_{i,t} + \beta_6 SIZE_{i,t} + \beta_7 \Delta SALES_{i,t} + \beta_8 EXPR_{i,t} + \sum YD_{i,t} + \sum ID_{i,t} + \epsilon \quad (\text{식 } 3)$$

변수	비조사기업		세무조사기업	
	계수	t값	계수	t값
(상수)	-0.080**	-2.316	-0.252	-1.021
CSR	0.109**	1.945	-0.724	-1.310
ROA	-0.026	-0.554	-0.682	-1.372
LEV	0.011	0.246	-0.447	-1.077
PPE	-0.093**	-2.143	0.092	0.243
INTAN	-0.040	-0.913	0.039	0.114
SIZE	0.109**	1.980	0.476	1.152
△SALES	0.020	0.487	0.100	0.256
EXPR	-0.085**	-2.168	0.389	1.167
ID	포함	포함	포함	포함
YD	포함	포함	포함	포함
F값	3.722***		0.884	
R ²	0.119		0.469	
N	658		31	

주1) 변수의 정의: [표 5-1] 참조

주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양측검정)

[표 5-7] 비조사기업과 세무조사기업의 회귀분석 결과(2)

$$TAXAVOID(BTD)_{i,t} = \alpha + \beta_1 CSR(E, S, G)_{i,t} + \beta_2 ROA_{i,t} + \beta_3 LEV_{i,t} + \beta_4 PPE_{i,t} + \beta_5 INTAN_{i,t} + \beta_6 SIZE_{i,t} + \beta_7 \Delta SALES_{i,t} + \beta_8 EXPR_{i,t} + \sum YD_{i,t} + \sum ID_{i,t} + \epsilon \quad (\text{식 } 3)$$

변수	비조사기업		세무조사기업	
	계수	t값	계수	t값
(상수)	-0.096***	-2.582	-0.458*	-1.943
CSR	0.022	0.377	-1.138**	-2.862
ROA	-0.016	-0.337	-1.140***	-3.309
LEV	0.012	0.254	-0.658*	-1.959
PPE	-0.076*	-1.691	0.510*	1.728
INTAN	-0.066	-1.502	0.332	1.206
SIZE	0.112**	1.991	0.701**	2.204
△SALES	0.113***	2.691	0.426	1.343
EXPR	-0.046	-1.153	0.652***	2.672
ID	포함	포함	포함	포함
YD	포함	포함	포함	포함
F값	2.345***		1.624	
R ²	0.078		0.619	
N	658		31	

주1) 변수의 정의: [표 5-1] 참조.

주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양측검정)

5.3.4 <가설 4>의 검증(CSR과 조세 회피 간 세무조사 전과 후의 조절효과)

CSR과 조세 회피 간 세무조사 전과 후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독립변수 CSR을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하여 투입하고 VIF 지수를 살펴본 결과 1.181~7.931로 모두 10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어 보인다. 처음에는 통제변수와 독립변수 CSR을 넣고, 다음 단계는 조절변수 ANTE와 POST를 넣고 마지막으로 상호작용 항 $CSR \times ANTE$, $CSR \times POST$ 를 넣어 위계적으로 회귀분석을 하였다. <표 9>는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단계의 회귀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위계적 입력에 의한 회귀분석에 의한 조절효과분석에서 조절효과의 유의도를 보는 방법에는 R^2 변화량이 유의적인가와 상호작용 항의 계수가 유의적인가를 통해 보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 R^2 변화량이 유의적인가를 보면 모형 1의 R^2 변화량은 2.3%(유의확률 0.088)이고 모형 2의 R^2 변화량은 1.4%(유의확률 0.171)이다. 모형 1과 모형 2 모두 설명력은 증가하였으나 모형 1에서는 통계적 확률 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모형 2에서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상호작용 항의 계수가 유의적인가를 보면 모형 1에서 상호작용 항 $CSR \times ANTE$ 의 회귀계수(β)는 통계적 확률 10% 수준에서 유의한 0.206이 나타났고, 상호작용 항 $CSR \times POST$ 의 회귀계수(β)는 통계적 확률 5% 수준에서 유의한 0.285가 나타났다. 모형 2에서 상호작용 항 $CSR \times ANTE$ 의 회귀계수(β)는 0.151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아니하였고, 상호작용 항 $CSR \times POST$ 의 회귀계수(β)는 통계적 확률 10% 수준에서 유의한 0.224가 나타났다. 모형 1에서는 세무조사 직전연도와 직후연도 모두 조절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고, 모형 2에서는 세무조사 직후연도에서 조절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ANTE일 때는 CSR과 조세 회피의 관계가 약한 음(-)의 관계로 나타나고, 세무조사 당해 연도일 때는 ANTE일 때 보다 더 강한 음(-)의 관계임을 알 수 있고, POST일 때는 약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들의 CSR과 조세 회피의 관계는 전체적으로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무조사 직전연도, 조

사연도, 세무조사 직후연도로 구분하여 CSR과 조세 회피의 관계를 살펴보면 세무조사 직전연도에는 약한 음(-)의 관계로 나타나고, 조사연도는 좀 더 강한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가 세무조사 직후연도에는 약한 음(-)의 관계로 전환되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세무조사 전과 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세 회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설 4를 검증한 결과 대체로 가설 4는 지지된다.

[표 5-8] <가설 4>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TAXA VOID(TS, BTD)_{i,t} = \alpha + \beta_1 CSR(E, S, G)_{i,t} + \beta_2 ANTE_{i,t} + \beta_3 POST_{i,t} + \beta_4 CSR \times ANTE_{i,t} + \beta_5 CSR \times POST_{i,t} + \beta_6 ROA_{i,t} + \beta_7 LEV_{i,t} + \beta_8 PPE_{i,t} + \beta_9 INTAN_{i,t} + \beta_{10} SIZE_{i,t} + \beta_{11} \Delta SALES_{i,t} + \beta_{12} EXPR_{i,t} + \sum YD_{i,t} + \sum ID_{i,t} + \epsilon \quad (\text{식 6})$$

변수	예상 부호	모형 1 (종속변수: TS)		모형 2 (종속변수: BTD)	
		계수	t값	계수	t값
(상수)		-0.150	-0.964	-0.153	-0.985
CSR	±	-0.365*	-1.878	-0.338*	-1.894
ANTE	±	0.154	1.632	0.142	1.644
POST	±	0.088	0.933	0.064	0.744
CSR×ANTE	±	0.206*	1.686	0.151	1.347
CSR×POST	±	0.285**	2.207	0.224*	1.887
ROA	+	0.263**	3.366	0.518***	7.197
LEV	-	0.078	0.868	0.119	1.449
PPE	±	0.077	0.951	-0.035	-0.470
INTAN	+	0.039	0.523	0.014	0.209
SIZE	±	0.085	0.703	0.067	0.604
△SALES	+	-0.262***	-3.662	-0.226***	-3.438
EXPR	±	-0.102	-1.322	-0.121*	-1.707
F값		3.183***		6.419***	
R ²		0.182		0.309	
R ² 변화량		0.023*		0.014	
N		185		185	

주1) 변수의 정의: [표 5-1] 참조. 다만, ANTE는 세무조사 직전연도 더미변수, POST는 세무조사 직후연도 더미변수, CSR×ANTE 와 CSR×POST는 상호작용 항

주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양측검정)

5.4 추가 분석

본 분석에서는 세무조사의 조절효과 및 세무조사 전과 후의 조절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본 추가분석에서는 기업의 기업집단 소속 여부 및 기업의 성장성이 조절작용을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조절효과 분석방법은 본 분석과 동일하다. 또한 본 분석의 가설 3 검증 관련한 표본을 다른 방식으로 선정하여 본 분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가설 3을 재검증하였다. 앞의 본 분석에서 가설 3의 검증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기업을 세무조사 연도의 31개 기업-연도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나 세무조사 기업을 다른 방식으로 선정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가지 방식으로 세무조사 기업을 재분류하여 가설 3을 재검증하였다. 먼저 세무조사 기업의 모든 연도를 세무조사 기업으로 하여 87개 기업-연도에 대하여 가설 3을 재검증하고, 나중에 전체표본 689개 기업-연도에서 세무조사 직전 또는 직후의 56개 기업-연도를 제외한 633개 기업-연도를 전체표본으로 하고 세무조사 기업을 세무조사 연도의 31개 기업-연도로 설정하여 가설 3을 재검증 하였다. 이는 연구결과가 표본 선정에 의해 달라지는지 검증하고자 한 것이다.

5.4.1 기업집단의 CSR과 조세 회피 간 조절효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기업집단’이란 함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을,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1호에서는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당해회사 발행주식(우선주 제외)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대출자자인 회사라고 정하고, 제2호에서는 동일인이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라고 하였다.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해당한지에 관한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기업집단 정보포털²⁹⁾(groupopni.ftc.go.kr)에서 가능하다. 일례로 기업집단 ‘삼성’의 계열회사를 살펴보면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등 현재 총 61개의 기업으로 확인된다.

본연구의 표본기업 689개 기업 중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290개로서 42.09%이고,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은 399개로서 57.91%이다.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이 109개 더 많다. 재벌이라 불리는 대규모 기업집단과 그렇지 아니한 기업 간 CSR과 조세 회피와의 관계에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 (식 7)을 설정하였다.

$$TAXAVOID(TS, BTD)_{i,t} = \alpha + \beta_1 CSR(E, S, G)_{i,t} + \beta_2 GROUP_{i,t} + \beta_3 CSR(E, S, G) \times GROUP_{i,t} + \beta_4 ROA_{i,t} + \beta_5 LEV_{i,t} + \beta_6 PPE_{i,t} + \beta_7 INTAN_{i,t} + \beta_8 SIZE_{i,t} + \beta_9 \Delta SALE_{i,t} + \beta_{10} EXPR_{i,t} + \sum YD_{i,t} + \sum ID_{i,t} + \epsilon \quad (\text{식 } 7)$$

CSR과 조세 회피 간 기업집단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식 7)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독립변수 CSR을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하여 투입하여 VIF지수를

29)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경쟁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시스템의 확립을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 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groupopini.ftc.go.kr)

살펴본 결과 1.073~6.009로 모두 10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어 보인다. 처음에 통제변수와 독립변수 CSR을 넣고, 다음 단계에서 조절변수인 기업집단 더미변수 GROUP을,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상호작용 항 $CSR \times GROUP$ 을 넣어 회귀분석 하였다. [표 5-9]는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단계의 회귀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위계적 입력에 의한 회귀분석에 의한 조절효과분석에서 조절효과의 유의도를 보는 방법에는 R^2 변화량이 유의적인가와 상호작용 항의 계수가 유의적인가를 통해 보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 R^2 변화량이 유의적인가를 보면 모형 1의 R^2 변화량은 1.1%(유의확률 0.005)이고 모형 2의 R^2 변화량은 0.9%(유의확률 0.010)이다. 모형 1과 모형 2 모두 설명력은 증가하였고 그 변화량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상호작용 항의 계수가 유의적인가를 보면 모형 1과 모형 2에서 상호작용 항 $CSR \times GROUP$ 의 회귀계수(β)는 -0.229와 -0.215로 모두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확률 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조세 회피의 관계에서 기업집단이 조절효과가 있는지 실증분석 한 결과, 유의하게 음(-)의 방향으로 조절 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집단은 CSR과 조세 회피와의 양(+)의 관계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CSR과 조세 회피 간 기업집단의 조절효과 분석

$$TAXAVOID(TS, BTD)_{i,t} = \alpha + \beta_1 CSR(E, S, G)_{i,t} + \beta_2 GROUP_{i,t} + \beta_3 CSR(E, S, G) \times GROUP_{i,t} + \beta_4 ROA_{i,t} + \beta_5 LEV_{i,t} + \beta_6 PPE_{i,t} + \beta_7 INTAN_{i,t} + \beta_8 SIZE_{i,t} + \beta_9 \Delta SALE_{i,t} + \beta_{10} EXPR_{i,t} + \sum YD_{i,t} + \sum ID_{i,t} + \epsilon \quad (\text{식 7})$$

변수	예상 부호	모형 1 (종속변수: TS)		모형 2 (종속변수: BTD)	
		계수	t값	계수	t값
(상수)		-0.120***	-2.867	-0.136***	-3.002
CSR	±	0.306***	3.429	0.207**	2.259
GROUP	-	-0.014	-0.265	-0.017	-0.328
CSR×GROUP	±	-0.229***	-2.838	-0.215***	-2.600
ROA	+	-0.050	-1.125	-0.064	-1.412
LEV	-	-0.002	-0.054	0.001	0.019
PPE	±	-0.137***	-3.224	-0.110**	-2.497
INTAN	+	-0.047	-1.093	-0.061	-1.407
SIZE	±	0.127**	2.119	0.129**	2.105
△SALES	+	0.030	0.734	0.126***	3.087
EXPR	±	-0.069**	-1.793	-0.029	-0.742
YD		포함	포함	포함	포함
ID		포함	포함	포함	포함
F값		3.693***		2.397***	
R ²		0.122		0.083	
R ² 변화량		0.011***		0.009***	
N		689		689	

주1) 변수의 정의: [표 5-1] 참조. 다만, GROUP은 기업집단 터미변수

주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양측검정)

5.4.2 기업성장성($\Delta SALES$)의 CSR과 조세 회피 간 조절효과

매출액 증가율은 매출액의 변화 분으로 전기에 비해 당기에 매출액이 많아진다면 이익의 증가로 인해 조세부담이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조세 회피에 적극적일 수 있다. 기업의 성장성에 따라 CSR과 조세 회피 간 조세 회피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조절변수 $\Delta SALES$ 를 투입하는 다음 (식 8)을 설정하였다.

$$TAXAVOID(TS, BTD)_{i,t} = \alpha + \beta_1 CSR(E, S, G)_{i,t} + \beta_2 \Delta SALES_{i,t} + \beta_3 CSR(E, S, G) \times \Delta SALES_{i,t} + \beta_4 ROA_{i,t} + \beta_5 LEV_{i,t} + \beta_6 PPE_{i,t} + \beta_7 INTAN_{i,t} + \beta_8 SIZE_{i,t} + \beta_9 EXPR_{i,t} + \sum YD_{i,t} + \sum ID_{i,t} + \epsilon \quad (\text{식 8})$$

CSR과 조세 회피 간 매출액증가율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식 8)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독립변수 CSR을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하여 투입하고 VIF지수를 살펴본 결과 1.044~2.258로 모두 10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어 보인다. 처음에 통제변수와 독립변수 CSR을 넣고, 다음 단계에서 조절변수인 매출액증가율변수 $\Delta SALES$ 를,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상호작용 항 $CSR \times \Delta SALES$ 를 넣어 회귀분석 하였다.

[표 5-10]은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단계의 회귀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위계적 입력에 의한 회귀분석에 의한 조절효과분석에서 조절효과의 유의도를 보는 방법에는 R^2 변화량이 유의적인가와 상호작용 항의 계수가 유의적인가를 통해 보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 R^2 변화량이 유의적인가를 보면 모형 1의 R^2 변화량은 0.8%(유의확률 0.015)이고 모형 2의 R^2 변화량은 0.8%(유의확률 0.017)이다. 모형 1과 모형 2 모두 설명력은 증가하였고 그 변화량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상호작용 항의 계수가 유의적인가를 보면 모형 1과 모형 2에서 상호작용 항 $CSR \times \Delta SALES$ 의 회귀계수(β)는 0.090과 0.091로 모두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확률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조세 회피

의 관계에서 매출액증가율 변수(Δ SALES)는 조절효과가 있는지 실증분석 한 결과, 유의하게 양(+)의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출액증가율 변수(Δ SALES)는 CSR과 조세 회피와의 양(+)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0] CSR과 조세 회피 간 $\Delta SALES$ 의 조절효과 분석

$$TAXAVOID(TS, BTD)_{i,t} = \alpha + \beta_1 CSR(E, S, G)_{i,t} + \beta_2 \Delta SALES_{i,t} + \beta_3 CSR(E, S, G) \times \Delta SALES_{i,t} + \beta_4 ROA_{i,t} + \beta_5 LEV_{i,t} + \beta_6 PPE_{i,t} + \beta_7 INTAN_{i,t} + \beta_8 SIZE_{i,t} + \beta_9 EXPR_{i,t} + \sum YD_{i,t} + \sum ID_{i,t} + \epsilon \quad (\text{식 8})$$

변수	예상 부호	모형 1 (종속변수: TS)		모형 2 (종속변수: BTD)	
		계수	t값	계수	t값
(상수)		-0.075**	-2.168	-0.089***	-2.402
CSR	±	0.107*	1.955	0.019	0.335
$\Delta SALES$	+	0.020	0.503	0.117***	2.852
$CSR \times \Delta SALES$	±	0.090**	2.430	0.091**	2.390
ROA	+	-0.047	-1.047	-0.061	-1.342
LEV	-	0.006	0.129	0.009	0.196
PPE	±	-0.126***	-2.966	-0.099**	-2.266
INTAN	+	-0.055	-1.296	-0.070**	-1.603
SIZE	±	0.097**	1.809	0.099	1.801
EXPR	±	-0.051	-1.341	-0.012	-0.309
YD		포함	포함	포함	포함
ID		포함	포함	포함	포함
F값		3.746***		2.451***	
R ²		0.119		0.081	
R ² 변화량		0.008**		0.008**	
N		689		689	

주1) 변수의 정의: [표 5-1] 참조. 다만, $\Delta SALES$ 는 매출증가율 변수

주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양측검정)

5.4.3 연구대상을 다변화하여 실증 분석

앞의 본 연구에서 가설 3 검증 관련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 동안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기업을 세무조사 연도의 31개 기업-연도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나 추가 분석에서는 먼저 세무조사기업의 모든 연도를 세무조사 기업으로 하는 87개 기업-연도에 대하여 가설 3을 재검증하고, 다음에 전체표본 689개 기업-연도에서 세무조사 직전 또는 직후의 56개 기업-연도를 제외한 633개 기업-연도를 전체표본기업으로 하고 세무조사 기업을 세무조사 연도의 31개 기업-연도로 설정하여 가설 3을 재검증하였다. 이는 연구결과가 표본 선정에 의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함이다.

[표 5-11] 표본의 재선정

구 분		계(개)	2013년	2014년	2015년
본 연구	최종표본기업	689	234	237	221
	표본세무조사기업	31	11	16	4
재 선정 (1)	최종표본기업	689	234	237	221
	표본세무조사기업	87	28	30	29
재 선정 (2)	최종표본기업	633	203	222	208
	표본세무조사기업	31	11	16	4

5.4.4.1 표본의 재선정(1)

본 연구의 강건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분석으로 연구대상 기간 중에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이면 모든 연도에 걸쳐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으로 구분하

여 최종표본 689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87개의 기업에 대하여 가설 3에 대해 재검증을 시행하였다. 이는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과 그렇지 아니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조세 회피의 행태를 종합하여 비교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는 [표 5-12]와 같다. 독립변수 CSR을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하여 VIF지수를 살펴본 결과 1.028~2.432로 모두 10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어 보인다.

모형 1과 모형 2에서 상호작용 항 $CSR \times TIV_event$ 의 회귀계수(β)는 -0.044와 -0.087로 나타났으나 모형 1에서는 유의하지 않았고 모형 2에서는 통계적 확률 5% 수준에서 유의하게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에서는 CSR과 조세 회피의 관계가 음(-)의 관계로 나타나고, 비조사기업에서는 양(+)의 관계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앞에서 가설 3의 검증과 관련한 세무조사기업은 당해 연도에 세무조사 받은 기업으로 한정하여 31개의 기업으로 연구한 결과 CSR과 조세 회피 간 세무조사의 조절효과는 모형 1과 모형 2에서 상호작용 항 $CSR \times TIV_event$ 의 계수가 모두 음(-)의 값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표 8> 참조). 그러나 연구표본을 달리하여 세무조사기업을 87개로 재선정하여 추가분석 한 결과 모형 1과 모형 2에서 상호작용 항 $CSR \times TIV_event$ 의 계수가 모두 음(-)의 값으로 나타났고, 모형 1에서는 유의하지 아니하였지만 모형 2에서는 통계적 확률 5% 수준에서 유의하게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의 검증과 관련하여 CSR과 조세 회피의 관계에서 세무조사의 조절효과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표 5-12] 표본을 재선정(1)하여 가설 3을 재검증

$$TAXAVOID(TS, BT D)_{i,t} = \alpha + \beta_1 CSR(E, S, G)_{i,t} + \beta_2 TIV_event_{i,t} + \beta_3 CSR \times TIV_event_{i,t} + \beta_4 ROA_{i,t} + \beta_5 LEV_{i,t} + \beta_6 PPE_{i,t} + \beta_7 INTAN_{i,t} + \beta_8 SIZE_{i,t} + \beta_9 \Delta SALES_{i,t} + \beta_{10} EXPR_{i,t} + \sum YD_{i,t} + \sum ID_{i,t} + \epsilon \quad (\text{식 } 5)$$

변수	예상 부호	모형 1 (종속변수: TS)		모형 2 (종속변수: BT D)	
		계수	t값	계수	t값
(상수)		-0.092***	-2.623	-0.111***	-2.945
CSR	±	0.103*	1.832	0.033	0.567
TIV_event	-	-0.114**	-2.965	-0.092**	-2.341
CSR×TIV_event	±	-0.044	-1.063	-0.087**	-2.076
ROA	+	-0.053	-1.167	-0.078*	-1.699
LEV	-	-0.005	-0.113	-0.011	-0.250
PPE	±	-0.117***	-2.761	-0.088**	-2.005
INTAN	+	-0.042	-0.973	-0.064	-1.455
SIZE	±	0.125**	2.290	0.128**	2.285
△SALES	+	0.026	0.652	0.125***	3.055
EXPR	±	-0.064*	-1.679	-0.026	-0.666
ID		포함	포함	포함	포함
YD		포함	포함	포함	포함
F값		3.753***		2.497***	
R ²		0.124		0.086	
R ² 변화량		0.001		0.006**	
N		689		689	

주1) 변수의 정의: [표 5-1] 참조. 다만, CSR×TIV_event : 상호작용 항

주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양측검정)

5.4.4.2 표본의 재선정(2)

본연구의 전체표본 689개 기업-연도에서 세무조사 직전 또는 직후의 56개 기업-연도를 제외한 633개 기업-연도를 전체표본기업으로 하고 세무조사 기업을 세무조사 연도의 31개 기업-연도로 설정하여 가설 3을 재검증하였다. 이는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과 그렇지 아니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조세 회피의 행태를 확연하게 구분하여 비교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독립변수 CSR을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하여 VIF지수를 살펴본 결과 1.092~1.647로 모두 10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어 보인다. [표 5-13]은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단계의 회귀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위계적 입력에 의한 회귀분석에 의한 조절효과분석에서 조절효과의 유의도를 보는 방법에는 R^2 변화량이 유의적인가와 상호작용 항의 계수가 유의적인가를 통해 보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 R^2 변화량이 유의적인가를 보면 모형 1의 R^2 변화량은 0.0%(유의확률 0.834)이고 모형 2의 R^2 변화량은 0.0%(유의확률 0.931)이다. 모형 1과 모형 2 모두 설명력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상호작용 항의 계수가 유의적인가를 보면 모형 1과 모형 2에서 상호작용 항 $CSR \times TIV_event$ 의 회귀계수(β)는 0.008과 0.003으로 나타났다으나 모형 1과 모형 2에서 모두 유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가설 3의 검증과 관련한 세무조사기업은 당해 연도에 세무조사 받은 기업으로 한정하여 31개의 기업으로 연구한 결과 CSR과 조세 회피 간 세무조사의 조절효과는 모형 1과 모형 2에서 상호작용 항 $CSR \times TIV_event$ 의 계수가 모두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연구표본을 달리하여 세무조사기업을 87개로 재선정하여 가설3을 재검증한 결과 모형 1과 모형 2에서 상호작용 항 $CSR \times TIV_event$ 의 계수가 모두 음(-)의 값으로 나타났고, 모형 1에서는 유의하지 아니하였지만 모형 2에서는 통계적 확률 5% 수준에서 유의하게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연구표본을 달리하여 633개 기업-연도를 전체표본기업으로 하고 세무조사 기업을 세무조사 연도의 31개 기업-연도로 재선정하여 가설 3을 재검증한 결과 모두 양(+)의 값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가설 3의 검증과 관련하여

CSR과 조세 회피의 관계에서 세무조사의 조절효과가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CSR과 조세 회피의 관계에서 세무조사의 조절효과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

[표 5-13] 표본을 재선정(2)하여 가설 3을 재검증

$$TAXAVOID(TS, BTD)_{i,t} = \alpha + \beta_1 CSR(E, S, G)_{i,t} + \beta_2 TIV_event_{i,t} + \beta_3 CSR \times TIV_event_{i,t} + \beta_4 ROA_{i,t} + \beta_5 LEV_{i,t} + \beta_6 PPE_{i,t} + \beta_7 INTAN_{i,t} + \beta_8 SIZE_{i,t} + \beta_9 \Delta SALES_{i,t} + \beta_{10} EXPR_{i,t} + \sum YD_{i,t} + \sum ID_{i,t} + \epsilon \quad (\text{식 5})$$

변수	예상 부호	모형 1 (종속변수: TS)		모형 2 (종속변수: BTD)	
		계수	t값	계수	t값
(상수)		-0.091***	-2.492	-0.092***	-2.432
CSR	±	0.115**	2.393	0.072	1.466
TIV_event	-	-0.188***	-1.578	-0.177***	-4.413
CSR×TIV_event	±	0.008	0.241	0.003	0.086
ROA	+	-0.031	-0.680	-0.047	-1.019
LEV	-	-0.002	-0.060	-0.038	-0.839
PPE	±	-0.046	-1.014	0.003	0.070
INTAN	+	0.037	0.913	-0.024	-0.603
SIZE	±	0.098**	2.090	0.077*	1.625
△SALES	+	0.049	1.167	0.129***	3.073
EXPR	±	-0.052	-1.306	-0.034	-0.853
ID		포함	포함	포함	포함
YD		포함	포함	포함	포함
F값		3.013***		3.872***	
R ²		0.110		0.138	
R ² 변화량		0.000		0.000	
N		633		633	

주1) 변수의 정의: [표 5-1] 참조. 다만, CSR×TIV_event : 상호작용 항

주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양측검정)

VI. 결 론

6.1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세 회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을 중심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조세 회피의 대용치는 Desai and Dharmapala(2006)가 제안한 방법과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 BTD(Book Tax Difference)를 사용하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대용치는 한국지배구조원에서 산정한 ESG 점수를 사용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 동안 유가증권거래소에 상장한 689개 기업을 연구표본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가설 1의 검증 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측정치인 CSR은 종속변수인 조세 회피측정치인 TS에 대하여 통계적 확률 5%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세 회피측정치인 BTD에 대하여는 유의하지 아니하였다. CSR이 조세 회피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업이 CSR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거나 조세납부를 사회적 책임 활동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나 또는 CSR이 조세 납부를 대체한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가설 2의 검증 결과 세무조사 더미변수는 조세 회피측정치인 TS와 BTD에 대하여 모두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경험칙에 의해 또 다시 세무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것을 염려하여 조세 회피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대개 세무조사를 받은 그해에 추정세액을 내게 됨으로써 조세 회피측정치가 낮아졌을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가설 3의 검증 결과 CSR과 조세 회피의 관계에 세무조사의 조절 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SR과 조세 회피의 관계가 세무조사기업에서는 음(-)의 관계로 나타나고, 비조사기업에서는 양(+)의 관계로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세무조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가설 4의 검증 결과 세무조사 직전 연도 더미변수는 CSR과 조세 회피측정치인 TS의 관

제에서 유의하게 양(+)의 방향으로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무조사 직후 연도 더미변수는 CSR과 조세 회피측정치 TS 및 BTD의 관계에서 모두 유의하게 양(+)의 방향으로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들의 CSR과 조세 회피의 관계는 전체적으로 음(-)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무조사 직전 연도, 조사연도, 세무조사 직후 연도로 구분하여 CSR과 조세 회피의 관계를 살펴보면 세무조사 직전 연도에는 약한 음(-)의 관계로 나타나고, 조사연도는 좀 더 강한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가 세무조사 직후 연도에는 약한 음(-)의 관계로 전환되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와 관계있는 다른 요소에 대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기업의 기업집단 소속 여부 및 기업의 성장성이 CSR과 조세 회피 간 조절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조세 회피 간 기업집단이 유의하게 음(-)의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집단은 CSR과 조세 회피와의 양(+)의 관계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조세 회피의 관계에서 성장성을 나타내는 매출액증가율 변수(Δ SALES)는 유의하게 양(+)의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출액증가율 변수(Δ SALES)는 CSR과 조세 회피와의 양(+)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의 강건성(robustness)을 제고하기 위해 본 분석의 가설 3 검증 관련한 표본을 다른 방식으로 선정하여 본 분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가설 3을 재검증하는 추가분석을 시행하였다. 689개의 전체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기업을 조사연도뿐만 아니라 직전 연도와 직후 연도에도 세무조사기업으로 분류하여 세무조사기업 89개로 하여 가설3을 재검증하였다. 그 결과 종속변수인 조세 회피측정치 BTD에 대하여 상호작용 항의 계수가 통계적 확률 5%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나 세무조사는 CSR과 조세 회피 간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이 기각되었다고 하여 세무조사가 CSR과 조세 회피의 관계에서 조절 효과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리하면 일반기업의 CSR과 조세 회피는 양(+)의 관계로 나타나 CSR 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은 조세 회피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의 경우엔 CSR과 조세 회피는 음(-)의 관계로 나타나 CSR 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은 조세 회피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직전 연도와 세무조사 직후 연도는 각각 양(+)의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 CSR과 조세 회피와의 음(-)의 관계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조사 직전에는 약한 음(-)의 관계로 나타나고, 조사연도는 좀 더 강한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가 세무조사 직후 연도에는 약한 음(-)의 관계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6.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본 연구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거나 기업이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 조세 납부를 대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사회적 책임 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이 조세 회피 수준도 높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책임 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은 비조세 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조세 회피에 소극적이라는 관점을 견지해왔다. 본 연구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거나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조세 납부를 대체재로 인식한다면 사회적 책임 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이더라도 조세 회피에 적극적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세 회피에 대한 과세당국의 강력한 행정행위인 세무조사가 기업의 CSR 활동과 조세 회피의 관계에 어떠한 작용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관련 연구를 다각화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탈세’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CSR 활동에 참여하면서 성실히 조세를 내게 됨을 짐작할 수 있다. 세무조사는 적정한 과세를 실현하는 동시에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인 CSR 활동 참여를 끌어낼 수도 있음을 추정할 만하다.

세무조사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직전 2개 연도, 당해 조사연도, 세무조사 직후 2개 연도 연속하여 총 5개 연도의 자료를 수집하여 처음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세 회피의 관계에 세무조사 전 및 후가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CSR 대용치로 사용되어 왔던 KEJI 지수 대신 한국 지배구조원의 ESG의 평가등급을 CSR 활동 대용치로 사용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연구 기간을 최근 기간으로 하여 시의성 있는 연구 결과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의사결정권자, 기업에 투자하는 주주 또는 채권자, 사회적 책임 활동을 평가하는 평가기관, 그리고 조세법을 집행하는 과세당국 및 조세법을 입안하는 관련부처 등에 시의성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세무 정보의 미공개로 자료의 수집 및 연구의 범위에 제약이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CSR 측정치 및 조세 회피 측정치를 사용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CSR 단독이 아닌 기업 의사결정의 다른 우선적인 결정요인과 관련하여 연구함으로써 연구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국세공무원교육원. (2018). 『법인세법』.
- 고성삼, 박상섭. (2011). 세무조사전후의 조세 회피차이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28(2), 41-65.
- 고윤성, 김지홍, 최원욱. (2007). 조세 회피와 기업특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24, 9-40.
- 고종권. (2003).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이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28(2), 75-103.
- 기은선. (2012).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조세 회피 및 조세 회피에 대한 시 장반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세무학회』, 29(2), 107-136.
- 기은선, 이광숙. (2016). 장기적인 조세 회피 관리 능력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45(4), 1407-1434.
- 김경화, 권순창. (2014).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지배구조를 통해 조세 회피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56, 281-301.
- 김규철, 최수비. (2016).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활동이 조세 회피에 미치는 영향. 『경영컨설팅연구』, 16(4), 43-54.
- 김노창, 최기호. (2014).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 추정방법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31(4), 189-222.
- 김성택. (2012). 『CSR 5.0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서울: 도서출판 청람
- 김요환. (2015). 코스닥기업에 관한 사회적책임과 조세 회피와의 관계. 『국제지역연구』, 19(2), 193-205.
- 김정교, 김정호, 김경옥. (2015).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활동이 조세 회피에 미치는 영향.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57(2), 1-29.
- 나 영, 이상훈. (2016). IFRS 도입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 영향. 『회계연구』, 22(3), 201-229.
- 나 영, 홍석훈. (2011). 기업규모에 따른 CSR활동과 기업가치에 대한 실증분석. 『회계저널』, 20(5), 125-160.
- 나철호, 고종권, 김임현. (2016). 세무조사선정기준과 조세 회피와의 관계 및 추정기업예측모형. 『회계학연구』, 41(6), 159-207.
- 남영숙. (2013). 한국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현황 및 이슈: 2013 CSR 설문조사 결과 분석. 한국SR전략연구소.
- 노현섭. (2015). 『경영자보상과 조세 회피 연구』. 경기: 피앤씨미디어.
- 민재형, 김범석, 하승인. (2014).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기업의 환경적, 사회적, 지배구조적 요인이 주가수익률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과학회지』, 39(4), 33-49.
- 박수정, 차희원. (2009). 기업명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동기와 적합성이 위기시 기업 정당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삼성중공업 기름 유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2009(2), 496-532.
- 박주철, 이남우. (2014). 피세무조사 경험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교육학회』, 91-112.
- 박준령, 김요환. (2014).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조세 회피에 미치는 영향. 『상업교육연구』, 28(6), 313-325.
- 박춘호. (2016). 조세 회피 관련 연구동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경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신승묘. (2013).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가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38(4), 95-132.
- 신용식, 김용수, 전규안. (2017). 세무조사 전후 연도의 조세 회피 수준 변화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34(1), 107-147.
- 신찬유, 김정교. (2011).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사건의 영향을 완화하는가?: 담합적발을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46(3), 807-845.
- 심충진, 김문현, 이종운 (2006).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 간의 차이와 세무조사 및 추정세액에 대한 실증연구. 『세무학연구』, 23(4),

- 심충진, 이준규, 김진태. (2013). 세무조사 여부에 따른 조세 회피와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31, 81-104.
- 오익훈, 정재원. (2016). 회계이익 및 총포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와 기업가치관련성. 『세무회계연구』, 47, 1-26.
- 이상민. (2016). 한국 CSR의 역사. 『시민사회와 NGO』, 14(1), 93-140.
- 이준규, 김갑순. (2012). 『기업의 조세전략과 세무회계연구』. 서울: 영화조세통람.
- 이형준, 서영진. (2004).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무엇인가. 『노동경제연구원』, 21 - 22.
- 임동원, 오윤. (2013). 조세포탈과 조세 회피의 개념 구분. 『세무학연구』, 30(3), 161-188.
- 전규안, 김철환. (2008).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계산시 과세소득의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9(3), 167 - 190.
- 전주성. (2011). 조세 회피와 기업가치: 지배구조의 역할을 중심으로. 『재정학연구』, 4(4), 59 - 85.
- 정달성, 홍정화. (2013). 세무조사연도의 과세소득축소 지향적 법인세 세무조정 연구.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55(2), 105 - 144.
- 정우성. (2015). 기업의 CSR성과가 조세전략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60, 181-206.
- 정재훈. (2016). 『CSR과 윤리경영』. 서울: 도서출판 북넷.
- 주노종. (2007). 『고급재정학: 분석과 이해』. 경기: 한국학술정보.
- 최미화. (2015).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행수준과 조세 회피 및 자본비용관련성. 『회계정보연구』, 33(2), 161-193.

2. 국외문헌

- Campbell, K. and Helleloid, D. (2016). Starbucks: Social responsibility and tax avoidance. *Journal of Accounting Education*, 37, 38–60.
- Desai, M. A. and Dharmapala, D. (2006). Corporate Tax Avoidance and High-powered Incentiv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9, 145–179.
- Davis, A., Guenther, D., Krull, L. and Williams, B. (2016). Do Socially Responsible Firms Pay More Taxes?. *The Accounting Review*, 91, 47–68.
- Godfrey, P. and N. W. Hatch. (2007). Research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 Agenda for the 21st Century. *Journal of Business Ethics*, 70, 87–96.
- Hanlon, M. (2005). The Persistence and Pricing of Earnings, Accruals, and Cash Flows When Firms Have Large Book-Tax Differences. *The Accounting Review*, 80(1), 137–166.
- Hanlon, M., and S. Heitzman. (2010). A Review of Tax Research.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0, 127–178.
- Hasseldine, J. and Morris, G. (2013),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ax Avoidance: A Comment and Reflection. *Accounting Forum*, 37, 1–14.
- Hoi, C., Q. Wu, and H. Zhang. (2013). I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Associated with Tax Avoidance? Evidence from Irresponsible CSR Activities. *The Accounting Review*, 88, 2025–2059.
- Laguir, I., Stagliano, R., and Elbaz, J. (2015). Do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ffect Corporate Tax Aggressive?.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107. 662–675.
- Lanis, R. and G. Richardson. (2012).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 Tax Aggressiveness; a Test of Legitimacy Theory. *Accounting, Accounting & Accountability*, 26(1), 75–100.
- Lanis, R. and G. Richardson. (2015), Is Corporate Social Responsivility Performance Associated with Tax Avoidance?. *J Bus Ethics*, 27, 439–457.
- Lutz, P. (2010) "Tax avoidanc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you can't do both, or can you?". *Corporate Governanc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in Society*, 10(4), 365–374.
- Post, J. E., Lawrence, A. T. and Weber, J. (2002), Business and Society: Corporate Strategy, Public Policy. *Ethics*, 10, The McGraw–Hill Companies, Inc. p.11.
- Schwartz, M. S., and Carroll, A. B. (2003).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 Three-domain Approach. *Business Ethics Quarterly*, 13(4), 503–530.
- Sikka, P. (2010). Smoke and Mirror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ax Avoidance. *Accounting Forum*, 34, 153–168.
- Watson, L. (2011).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ax Aggressiveness: An Examination of Unrecognized Tax Benefits. *Working paper,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Watson, L. (2015).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ax Avoidance, and Earnings Performanc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37, 1–21.

ABSTRACT

A Study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ax Avoidance

- Focused on the corporations investigated by tax authorities -

Park, Ae-Ja

Major in Accounting

Ph. D.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As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nation grows, the functions of finance and tax are increasing. Therefore taxation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quality of life of tens of millions of people. Sincere tax payment is the activity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over legal obligations for corporate sustainable management. Recently, papers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ax Avoidance' which analyzing corporate tax payment behavior according to CSR have been reported, but the results of studies are inconsist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CSR activities and tax avoidance of listed corporations on the Stock Exchange, and to examine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ax avoidance level between corporations investigated and those who did not, and to analyze

the effect of tax investigation on relations of CSR activities and tax avoidance, an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CSR and tax avoidance before and after the tax investigation.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the First, the measure of CSR activities showed a positive value in the tax avoidance measure TS. The second, the dummy variables of tax investigations showed negative values for both the TS and BTD measures. The third, the tax investigation shows that there is no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SR activity level and tax avoidance. However, it is confirm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SR and tax avoidance of corporations investigated and those not investigated. The fourth, the dummy variables of the year immediately before the tax investigation showed positive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SR and TS, which is the measure of tax avoidance. The dummy variables of the year immediately after the tax investigation showed positive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SR and TS(BTD), which is the measure of tax avoidance.

This study suggests a new paradigm that corporations that are actively involved in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have a high level of tax avoidance, when corporations need to raise financial resources for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or when corporations recogniz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as substitute of paying taxe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diversifying related researches by trying to examine how tax investigation, which is a powerful administrative act of tax authorities, aff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CSR activities and tax avoidance.

【KEYWORD】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Tax Avoidance,
Tax Investigation